투자위험등급 : 1등급(매우 높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KB자산운용㈜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위험등급은 운용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 자 설 명 서

이 투자설명서는 KB 국민참여 정책형 뉴딜 혼합자산 투자신탁 제2호(사모투자재간접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KB 국민참여 정책형 뉴딜 혼합자산 투자신탁 제2호(사모투자재간접형)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KB 국민참여 정책형 뉴딜 혼합자산 투자신탁 제2호(사모투자재간접형)(DP286)

2. **집합투자업자 명칭:** KB자산운용주식회사(☎02-2167-8200)

3. **판 매 회 사:** KB국민은행 및 KB증권 등(2022년 06월 20일 기준)

4. **작 성 기 준 일:** 2022년 06월 20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2022년 06월 30일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투자신탁의 수익증권[모집(매출) 총액: 1억좌]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2021년 11월 29일부터 2021년 12월 10일까지
※ 모집기간은 판매회사의 결정에 따라 단축될 수 있습니다.
※ 상기 모집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정정신고하여 공시할 예정입니다.
※ 모집예정금액이 조기에 모두 판매되는 경우 모집이 조기 마감됩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공시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홈페이지 → 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홈페이지 → dart.fss.or.kr
   서면문서: 집합투자업자의 본점 및 판매회사 영업점

※ 이 투자설명서는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B자산운용

[목 차]

<요약정보>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3. 모집예정금액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인수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4. 집합투자업자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1. 매입, 환매, 전환 기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세전 기준)

제4부. 집합투자기구의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 회사에 관한 사항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5.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참고] 펀드 용어 정리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투자자는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5.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6.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합니다.**

8. 원본손실위험 등 이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의 관할 국가가 대한민국 이외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 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투자자의 국적 국가 또는 세법상의 과세 관할 국가)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의 과세 관할 국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좌 개설 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0. 이 집합투자기구는 환매가 불가능한 폐쇄형 집합투자기구로 환금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한국거래소에 상장(설정일 이후 90일 이내)합니다.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일반적인 상장주식에 비해 유동성이 낮아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수 있으며, 실제 공시되는 기준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집합투자기구는 만기까지 보유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투자신탁의 만기 시점까지 투자 대상 자산의 처분이 완료되지 않거나 투자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이 투자신탁의 상환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만기가 연장될 수 있으며 상장이 폐지 될 수 있습니다.

11. 이 집합투자기구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하 "피투자 사모펀드"라 한다)에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입니다. 주요 투자대상인 피투자 사모펀드는 공모 집합투자기구에서 적용되는 공시 의무 등이 법령 상 배제되어 운용과 관련된 정보의 상세한 내역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피투자 사모펀드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직접 자산을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뿐만 아니라, 공모 집합투자기구에 주로 투자하는 일반적인 재간접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기회비용과 투자손실을 부담할 위험이 있습니다.

12. 이 집합투자기구가 주로 투자하는 피투자 사모펀드는 공모 집합투자기구에서 적용되는 운용규제 등이 법령 상 배제되어 상대적으로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투자를 수행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해 더 많은 투자위험이 존재할 수 있어 투자 결과에 따라 매우 큰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피투자 사모펀드의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및 금전차입 한도 등에 따른 레버리지 수준은 일반 공모 집합투자기구 대비 현저하게 높아질 수 있고, 공모 집합투자기구에서 적용되는 분산투자 등의 운용제한 요건이 배제되어 특정 종목, 섹터 또는 비시장성·비유동성 자산에 집중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이 매우 높아져 투자원금의 상당부분 또는 전부가 손실이 날 수 있으며 유동성이 부족하여 상환금 지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3. 이 집합투자기구가 주로 투자하는 피투자 사모펀드는 선순위·후순위 출자자에 대해 손익의 분배 또는 손익의 순위를 차등화하는 구조의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개별 피투자 사모펀드 손실 발생 시 후순위 출자자의 경우 일정 수준의 손실(후순위 출자 금액 한도, 피투자 사모펀드 설정액의 약 20% 수준)을 우선 부담하는 동시에 기준수익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수익에 대해 일정 수준 수익을 더 많이 배분 받게 됩니다. 선순위 투자자의 경우 개별 피투자 사모펀드 손실 발생 시 후순위 출자자로 인해 일정 수준의 손실(후순위 출자 금액 한도, 피투자 사모펀드 설정액의 약 20% 수준)을 방어 할 수 있게 되는 동시에 기준수익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수익에 대해 후순위 출자자가 배분 받는 수익 대비 더 적은 수익을 배분 받게 됩니다. 이 집합투자기구는 다수의 피투자 사모펀드 선순위 증권에 투자하는 선순위 출자자로 피투자 사모펀드의 손실이 후순위 출자자의 출자비율(약 20% 수준)을 초과하여 발생 할 경우 선순위 출자자인 이 집합투자기구에도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후순위 출자는 개별 피투자 사모펀드 기준으로 이루어지므로 이 집합투자기구(사모투자재간접형 공모펀드)에서 발생하는 전체 손실을 기준으로 우선 손실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며 이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의 일부를 보장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4. 이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개별 피투자 사모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후순위 출자자가 우선 부담하는 손실 금액은 선순위 출자자인 이 집합투자기구의 과세대상 수익으로 인식되어 실제 이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의 이익이 없거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5. 이 집합투자기구가 주로 투자하는 피투자 사모펀드는 시장가격이 결정되지 않는 자산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산의 시장가격이 결정되지 않는 경우 피투자 사모펀드는 공정가격을 산출하여 기준가격에 반영할 수 있으나, 집합투자기구가 산정한 공정가격이 시장가격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피투자 사모펀드는 매일 기준가격을 산출하지 않고 일정기간(주간, 월간 등) 동안 1번씩 기준가격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투자 사모펀드가 투자하는 자산의 가치는 적시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투자 사모펀드의 기준가격은 투자자산이 공정가격으로 평가될 경우 또는 적시에 기준가격이 산출되지 않을 경우에 실제 시장가치와 일정기간 동안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 사모펀드는 선순위·후순위 출자자에 대해 손익분배를 차등화 하는 구조로 손익분배 차등화에 따른 기준가격이 정확하게 반영되어 산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피투자 사모펀드의 기준가격이 정확하게 산출되지 않을 경우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 산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만기 시점까지 시장상황 및 경제여건 등에 따라 개별 피투자 사모펀드 자산의 처분이 완료되지 않거나 투자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이 투자신탁의 상환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만기가 연장될 수 있습니다.

16.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위험이 이 집합투자기구에 전이 될 수 있으며 투자대상 자산의 가격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자산이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하거나, 매각이 어려운 자산인 경우 등 투자자산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17. 이 집합투자기구는 정부가 발표한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에 따른 3종(정책형 뉴딜펀드, 뉴딜 인프라펀드, 민간 뉴딜펀드)의 한국판 뉴딜펀드 중 정책형 뉴딜펀드로 1,000억원 규모가 추가조성됨에 따라 결성된 『국민참여 뉴딜펀드 제2호』입니다.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 뉴딜 관련 피투자 사모펀드에 주로 투자하는 혼합자산형 펀드이며 정부 재정지원을 통해 투자원본의 일부 손실을 우선 부담해주는 구조로, 별도의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뉴딜 인프라펀드가 아님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KB 국민참여 정책형 뉴딜 혼합자산 투자신탁 제2호(사모투자재간접형) [펀드코드: DP286]

투자위험등급					
1등급(매우 높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KB자산운용㈜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입니다.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50%를 초과하여** 다수의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분산투자하는 투자신탁으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투자에 따른 투자위험, 기준가격 산정관련 위험, 집중투자에 따른 위험, 주식관련 사채 및 비상장 주식 투자위험, 선순위 대출 투자위험 및 중소 · 중견기업 투자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약정보는 **KB 국민참여 정책형 뉴딜 혼합자산 투자신탁 제2호(사모투자재간접형)**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 · 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 이 투자신탁은 정부가 주도하여 추진중인 한국판 뉴딜 펀드 중 정책형 뉴딜펀드에 해당하는 사모투자재간접형 공모펀드입니다. 이 투자신탁은 한국판 뉴딜 정책과 관련된 상장 및 비상장 중소·중견기업의 지분 및 메자닌 등에 투자하는 7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하 "피투자 사모펀드"라 한다)에 동일 비중으로 투자하여 가격 상승 등에 따른 수익을 추구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7개 피투자 사모펀드는 현재 미설정 상태로, 설정 이후에는 뉴딜 관련 기업을 투자대상으로 하여 운용됩니다. -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달성을 위해 한국성장금융이 국민참여 정책형 뉴딜 펀드 설계 및 자문을 위한 협력 파트너로 공모펀드 운용사 5개사를 우선 선정하고 선정된 공모펀드 운용사와 공동으로 최종 피투자 사모펀드 운용사 6개사(7개 펀드)를 선정했습니다. 이때, 한국성장금융과 사모투자재간접형 공모펀드 5개 운용사는 포트폴리오 다양화 및 뉴딜 분야 투자 발굴을 위해 피투자 사모펀드 선정 시 운용사의 재무 건전성, 경영 안정성, 운용 인력의 투자성과, 뉴딜 분야 투자전략 등을 철저히 검증하고 최종적으로 투자대상 사모펀드 운용사를 선정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피투자 사모펀드는 선순위·후순위 출자자에 대해 손익의 분배 또는 손익의 순위를 차등화하는 구조의 펀드로 개별 피투자 사모펀드 손실 발생 시 후순위 출자자의 경우 일정 수준의 손실(약 20% 수준)을 우선 부담하는 동시에 기준수익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수익에 대해 일정 수준 수익을 더 많이 배분 받게 됩니다. 또한, 선순위 투자자의 경우 개별 피투자 사모펀드 손실 발생 시 후순위 출자자로 인해 일정 수준의 손실(약 20% 수준)을 방어 할 수 있게 되는 동시에 기준수익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수익에 대해 후순위 출자자가 배분 받는 수익 대비 더 적은 수익을 배분 받게 됩니다. - 이 투자신탁은 다수의 피투자 사모펀드 선순위 증권에 투자하는 선순위 출자자로 개별 피투자 사모펀드의 손실이 후순위 출자자의 출자비율(약 20% 수준)을 초과하여 발생 할 경우 선순위 출자자인 이 투자신탁에도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후순위 출자자의 출자는 개별 피투자 사모펀드 기준으로 이루어지므로 후순위 출자자의 우선 손실 부담은 이 투자신탁 기준으로 산정된 전체 손실의 약 20%를 우선 부담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판 뉴딜이란? -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구조를 혁신하여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대규모 정부 정책 프로젝트로 디지털 혁신, 친환경 경제·사회 구축 및 사회 안정망 형성을 위해 2025년까지 160조원이 투자 될 예정 · 디지털 뉴딜: 대규모 ICT 인프라 구축 및 디지털 신산업 육성, 주력산업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경쟁력 강화 · 그린 뉴딜: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구축 및 친환경 산업의 경쟁력 강화 - 뉴딜 관련 기업: 정책형 뉴딜 펀드 투자 가이드라인 내 디지털 뉴딜 및 그린 뉴딜 분야에 속하는 DNA, 뉴딜 서비스, 친환경 녹색산업, 미래차·그린모빌리티, SOC·물류디지털, 스마트제조·스마트팜의 6대 핵심산업 분야에서 혁신을 이끄는 고부가가치 핵심기술 보유 또는 개발 중인 기업, 뉴딜 관련 벤처기업(AI기업, 친환경 기업 등) ※ 한국판 뉴딜 펀드는 한국판 뉴딜의 추진동력을 강력하게 뒷받침 하고,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생산적으로 흡수 활용하며 한국판 뉴딜 추진에 따른 성과를 국민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①정책형 뉴딜펀드(재정출자를 통한 투자위험 우선 부담) ②뉴딜 인프라펀드(파격적인 세제지원으로 인센티브 부여) ③민간 뉴딜펀드(수익성 있는 양질의 뉴딜 프로젝트 발굴·제시)의 다층적 펀드 구조로 설계됐습니다. ※ 이 투자신탁이 사모투자재간접형 공모펀드로 참여하는 정책형 뉴딜펀드는 정부·정책금융, 기관투자자, 국민 참여로 역할을 분담하여 펀드를 구성하게 됩니다. 정부재정의 후순위 출자 등을 통해 투자 위험을 일부 우선 부담해 투자 안정성을 제고하고 피투자 사모펀드 운용사는 정부의 투자 가이드라인을 통해 뉴딜 분야에 집중 투자하며 일반 국민의 사모투자재간접형 공모펀드 투자를 통해 뉴딜 투자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게 됩니다.

※ 이 투자신탁은 정부가 발표한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에 따른 3종(정책형 뉴딜펀드, 뉴딜 인프라펀드, 민간 뉴딜펀드)의 한국판 뉴딜펀드 중 정책형 뉴딜펀드로 1,000억원 규모가 추가조성됨에 따라 결성된 『국민참여 뉴딜펀드 제2호』입니다. 또한, 정부재정의 후순위 출자 등을 통해 투자위험을 우선 부담해주는 구조의 펀드로, 별도의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뉴딜 인프라 펀드가 아님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피투자 사모펀드의 손익 배분 구조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간이투자설명서의 [별첨] 및 정식 투자설명서 투자전략 부분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류

투자신탁, 혼합자산, 폐쇄형(환매가 불가능한 투자신탁), 단위형, 종류형, 사모투자재간접

투자비용

클래스 종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총보수 및 비용 (연간, 단위: %)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 (단위: 천원)			
	판매수수료	총보수	판매보수	동종유형 총보수	합성 총보수·비용	1년	2년	3년	4년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납입금액의 0.70%이내	0.780	0.400	1.030	1.680	240	415	597	78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	0.980	0.600	1.240	1.880	192	389	592	802

(주1)'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판매수수료 + 합성 총보수비용[피투자펀드 보수 포함])**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주2) **A 클래스와 C 클래스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3년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나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3) 이 집합투자기구의 A 클래스와 C 클래스에 각각 투자하여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는 총보수·비용은 C 클래스에 가입한 투자자가 A 클래스(선취판매수수료 0.7% 징구 가정)에 가입한 투자자보다 더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부담하게되는 총보수·비용 차이 등을 고려하여 투자 판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4) **합성 총 보수·비용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보수(다수의 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동일 비중 투자를 가정하여 평균으로 약 연 0.90%를 산정)를 포함한 비율로서, 투자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보수·비용 수준을 대략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이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5)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p.58-p.5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6)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 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투자실적추이 (연평균수익률) (단위:%)

종류	최초설정일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이후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2021-12-13					
수익률 변동성	2021-12-13					

(주1) 비교지수: 해당사항 없음

(주2)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 총비용 지급 후 해당기간동안의 세전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3)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펀드 연평균 수익률(혼합자산)(%)				운용경력년수
			펀드수 (개)	규모 (억)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이덕주	1973년	책임	21	1,076	0.45	5.97	0.45	5.97	15년 7개월
김세희	1984년	부책임	23	5,963	-	-			9년 6개월

(주1)'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dis.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이 집합투자기구는 환매가 불가능한 폐쇄형 집합투자기구로 환금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한국거래소에 상장(설정일 이후 90일 이내)합니다.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일반적인 상장주식에 비해 유동성이 낮아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수 있으며, 실제 공시되는 기준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집합투자기구는 만기까지 보유할 수 있는 수익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 이 집합투자기구가 주로 투자하는 피투자 사모펀드는 공모 집합투자기구에서 적용되는 운용규제 등이 법령 상 배제되어 상대적으로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투자를 수행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해 더 많은 투자위험이 존재할 수 있어 투자결과에 따라 매우 큰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피투자 사모펀드의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및 금전차입 한도 등에 따른 레버리지 수준은 일반 공모 집합투자기구 대비 현저하게 높아질 수 있고, 공모 집합투자기구에서 적용되는 분산투자 등의 운용제한 요건이 배제되어 특정 종목, 섹터 또는 자산에 집중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이 매우 높아져 투자원금의 상당부분 또는 전부가 손실이 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기구가 주로 투자하는 피투자 사모펀드는 선순위 · 후순위 출자자에 대해 손익의 분배 또는 손익의 순위를 차등화하는 구조의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개별 피투자 사모펀드 손실 발생 시 후순위 출자자의 경우 일정 수준의 손실(후순위 출자 금액 한도, 피투자 사모펀드 설정액의 약 20% 수준)을 우선 부담하는 동시에 기준수익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수익에 대해 일정 수준 수익을 더 많이 배분 받게 됩니다. 선순위 투자자의 경우 개별 피투자 사모펀드 손실 발생 시 후순위 출자자로 인해 일정 수준의 손실(후순위 출자 금액 한도, 피투자 사모펀드 설정액의 약 20% 수준)을 방어 할 수 있게 되는 동시에 기준수익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수익에 대해 후순위 출자자가 배분 받는 수익 대비 더 적은 수익을 배분 받게 됩니다. 이 집합투자기구는 다수의 피투자 사모펀드 선순위 증권에 투자하는 선순위 출자자로 피투자 사모펀드의 손실이 후순위 출자자의 출자비율(약 20% 수준)을 초과하여 발생 할 경우 선순위 출자자인 이 집합투자기구에도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후순위 출자는 개별 피투자 사모펀드 기준으로 이루어지므로 이 집합투자기구(사모투자재간접형 공모펀드)에서 발생하는 전체 손실을 기준으로 우선 손실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며 이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의 일부를 보장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주요 투자위험	원본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 원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의 결정과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의 결정 및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예금과 달리 은행 등에서 매입한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집합투자증권 등 가격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등에 주로 투자하므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주식, 채권, 메자닌 등) 등의 가격 하락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대상 자산의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이 투자신탁의 가치도 일정수준 하락하게 됩니다.
	일반 사모 집합투자기구 투자에 따른 투자위험	- 이 투자신탁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입니다. 주요 투자대상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는 공모 집합투자기구에서 적용되는 공시 의무 등이 법령 상 배제되어 운용과 관련된 정보의 상세한 내역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직접 자산을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는 물론, 공모 집합투자기구에 주로 투자하는 일반적인 재간접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기회비용과 손실을 부담할 위험이 있습니다. -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는 공모 집합투자기구에서 적용되는 운용규제 등이 법령 상 배제되어 상대적으로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투자를 수행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해 더 많은 투자위험이 존재할 수 있어 투자결과에 따라 매우 큰 손실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특히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파생상품 위험 평가액 및 금전차입 한도는 최대 400%까지 허용되어 일반 공모 집합투자기구 대비 파생상품, 금전차입 등에 따른 레버리지 수준이 현저하게 높아질 수 있고, 공모 집합투자기구에서 적용되는 분산투자 등의 운용제한 요건이 배제되어 특정 종목 또는 자산에 대한 투자비중이 현저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일반 사모 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격 산정 관련 위험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시장가격이 결정되지 않는 자산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산의 시장가격이 결정되지 않는 경우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는 공정가격을 산출하여 기준가격에 반영할 수 있으나, 집합투자기구가 산정한 공정가격이 시장가격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매일 기준가격을 산출하지 않고 일정기간(주간, 월간 등) 동안 1번씩 기준가격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자산의 가치는 적시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격은 투자자산이 공정가격으로 평가될 경우 또는 적시에 기준가격이 산출되지 않을 경우에 실제 시장가치와 일정기간 동안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집중투자에 따른 위험(섹터)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뉴딜 산업에 속하는 증권 등에 선별적으로 집중투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변동성 및 투자한 특정 섹터의 위험이 미치는 영향력이 동일유형의 일반적인 펀드 혹은 해당 시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주식관련 사채 및 비상장 주식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의 주식관련 사채(메자닌 증권) 및 비상장 주식에도 투자합니다. 주식관련 사채 등 메자닌 증권은 일반적으로 기업이 발행 비용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대적으로 발행 비용을 많이 지불해야 하는 신용등급이 낮거나 재무상황이 좋지 않은 기업 위주로 발행됩니다. 또한, 메자닌 증권은 일반 채권 대비 발행물량이 적고 시장이 협소하여 시장 매각 시 수요가 전혀 없거나 부족하여 매각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매각이 가능하더라도 적정가격을 받지 못할 위험이 있으며 신용경색 등의 시장상황이 발생할 경우 자산을 현저하게 낮은 가격에 매각하여 수익률이 급격히 낮아지거나 자산 등의 매각이 지연되어 만기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장내에 상장 되어도 일반주식에 비해 유동성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비상장 주식은 지분매각, IPO 등을 통해 매각할 계획이나 전반적인 시장침체로 인한 공모주 시장의 침체, 상장요건 미충족, 대주주 철회, 기타 소송 및 외부 변수 등으로 IPO가 무산되거나 사업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여건의 변화 및 사업부진 등의 사유로 투자대상 자산의 매각이 지연될 수 있는 위험이 있어, 이는 곧 투자신탁재산의 가치하락 및 이 투자신탁의 해지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선순위 대출 투자위험	선순위 대출채권 투자 시 투자대상 회사의 부실이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하여 담보를 설정할 예정이나 자산의 매각을 통한 전체 자금의 회수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선순위 대출채권의 신용도나 가치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의 발생, 대출채권의 조기상환, 대출채권 담보자산의 매각이 불가능 하거나 지연될 경우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 투자신탁의 만기가 연장 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중소·중견기업 투자위험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중소·중견기업들은 높은 수준의 사업위험과 재무적 위험을 지니기에 상당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중소·중견 기업들은 초기개발단계에 있거나 영업손실 또는 변동성이 큰 영업성과를 보일 수 있고 사업환경이 빠르게 변할 수 있습니다. 초기단계 중소·중견기업들은 우수한 인적자원을 보유하고자 할 때 경쟁이 매우 심하며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거나 특정기술을 최초로 상용화는 능력에 의해 그 성패가 좌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중소·중견기업들은 운영을 지속하기 위하여 상당한 자본이 요구되며 기존 기업 및 경쟁 기업들로부터 상당한 경쟁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화하는 사업 및 경제환경에 대한 이들 기업의 대응능력은 제한적일 수 있으며 어떤 life cycle 단계에서도 실패하거나 상당한 가치하락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중소·중견기업들에 대한 투자는 이미 자리잡은 기업 또는 산업에 대한 투자보다 큰 위험을 수반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유가증권은 개별기업의 재무구조에 있어서 가장 후순위에 해당되며 이에 큰 손실위험을 수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기연장 및 상환금 지급 지연 위험	이 투자신탁은 만기가 최초설정일로부터 4년(48개월)인 **폐쇄형 투자신탁으로 환매청구가 불가능한 투자신탁**입니다. 투자신탁의 만기까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자산의 매각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수익자총회를 통하여 상환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만기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수익자총회에서 만기연장이 결의된 경우에도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수익증권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매수청구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이 주식관련사채(메자닌 증권) 및 상장·비상장 주식이므로 해당 자산이 처분되지 아니하여 투자신탁의 재산으로 수익증권 매수가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상환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유동성위험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자산의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하거나, 매각이 어려운 자산인 경우 투자자산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환매가 불가능한 혼합자산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이와 같은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는 증권시장에 상장이 되어야 하며, 상장이 되더라도 거래량 부진 등의 사유로 투자자가 원하는 시기에 매매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거 경험으로 볼 때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혼합자산 집합투자기구는 거래량이 매우 제한적이었으므로 이 투자신탁 또한 증권시장 상장에도 불구하고 유동성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매입방법	투자신탁 최초설정일(2021년 12월 13일)의 기준가격	**환매방법**	환매금지형으로 해당사항 없음
환매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기준가	산정방법	- 당일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 부채총액) /전일 집합투자기구 총좌수 - 1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공시장소	판매회사 본 · 영업점 및 집합투자업자(www.kbam.co.kr)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과세	구분	과세의 주요내용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익자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 세제혜택 계좌 · 클래스 · 펀드 투자자의 과세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2부.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환절차 및 방법	해당사항 없음	
집합투자업자	KB자산운용주식회사 (☎ 02-2167-8200 / 인터넷 홈페이지 www.kbam.co.kr)	
모집기간	2021년 11월 29일부터 2021년 12월 10일까지	모집 매출 총액: 1억 좌
효력발생일	2022년 06월 30일	존속기간: 최초설정일로부터 2025년 12월 15일까지 ※ 다만, 주된 투자대상자산인 집합투자증권 등이 신탁계약기간 종료일 이전에 전부 상환 또는 매각되는 경우 최초설정일로부터 그 상환금이 전부 회수되는 날을 기산일로 하여 15영업일 이내에서 집합투자업자가 정하여 공시하는 날까지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kbam.co.kr)의 홈페이지 참고	
참조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p.63~6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 종류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수수료		수수료 선취(A)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3년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3년 3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증권입니다.
판매수수료		수수료 미징구(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3년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3년 3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증권입니다.
판매경로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증권**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별첨] 이 투자신탁의 투자 구조 등에 관한 사항

[한국판 뉴딜 펀드 투자 구조]

- 이 투자신탁은 정부가 발표한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에 따른 3종(정책형 뉴딜펀드, 뉴딜 인프라 펀드, 민간 뉴딜펀드)의 한국판 뉴딜펀드 중 정책형 뉴딜펀드로 1,000억원 규모가 추가조성됨에 따라 결성된 『국민참여 뉴딜펀드 제2호』에 해당하는 사모투자재간접형 공모펀드 입니다.
- 한국판 뉴딜 펀드는 한국판 뉴딜의 추진동력을 강력하게 뒷받침 하고,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생산적으로 흡수·활용하며 한국판 뉴딜 추진에 따른 성과를 국민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①정책형 뉴딜펀드(재정출자를 통한 투자위험 우선 부담) ②뉴딜 인프라펀드(파격적인 세제지원으로 인센티브 부여) ③민간 뉴딜펀드(수익성 있는 양질의 뉴딜 프로젝트 발굴·제시)의 다층적 구조로 설계된 정부 주도의 국민참여 정책형 펀드입니다.

<한국판 뉴딜 펀드 구조>

※ 이 투자신탁이 사모투자재간접형 공모펀드로 참여하는 정책형 뉴딜펀드는 정부·정책금융, 기관투자자, 국민 참여로 역할을 분담하여 펀드를 구성하게 됩니다. 정부재정의 후순위 출자 등을 통해 투자 위험을 일부 우선 부담해 투자 안정성을 제고하고 피투자 사모펀드 운용사는 정부의 투자 가이드라인을 통해 뉴딜 분야에 집중 투자하며 일반 국민의 사모투자재간접형 공모펀드 투자를 통해 뉴딜 투자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게 됩니다.

※ 이 투자신탁은 정부재정의 후순위 출자 등을 통해 투자위험을 우선 부담해주는 구조의 펀드로, 별도의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뉴딜 인프라 펀드가 아님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 정책형 뉴딜 펀드 투자구조(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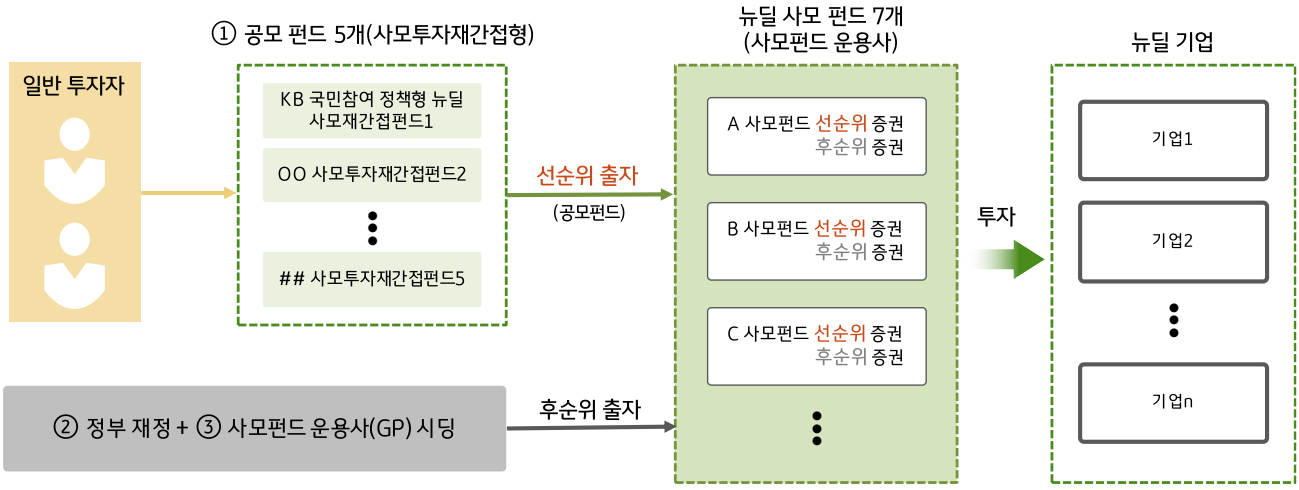

※ 피투자 사모펀드 출자금액은 사모투자재간접형 공모펀드 총 모집(판매)금액에서 유동성 및 보수 등 비용을 제외한 출자금액 기준으로 실제 공모펀드 판매금액과 피투자 사모펀드에 최종적으로 출자하는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익배분 구조(예시)]

- 선순위·후순위 출자구조에 따라 이익·손실을 구분하여 아래 순서에 따라 배분합니다.

손익	배분순서
이익	선순위 원금 → 후순위 원금 → 선순위 수익(기준수익*까지) → 후순위 수익(기준수익*까지) → 초과수익 안분**(선순위 4 : 후순위 6) * 기준수익: Multiple((회수총액/출자총액) - 1) = 20% ** 후순위내 안분 비율 - 재정 7 : 사모운용사 3
손실	후순위 원금 → 선순위 원금

※ 개별 피투자 사모펀드는 선순위·후순위 출자구조에 따라 이익과 손실을 차등하여 배분하는 구조로, 피투자 사모펀드의 손실이 후순위 출자자의 출자비율(약 20%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선순위 출자자인 사모투자재간접형 공모펀드에서도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후순위 출자자의 출자는 개별 피투자 사모펀드 기준으로 이루어지므로 후순위 출자자의 우선 손실 부담은 사모투자재간접형 공모펀드 기준으로 산정된 전체 손실의 약 20%를 우선 부담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별 피투자 사모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후순위 출자자가 우선 부담하는 금액은 선순위 출자자의 과세대상 수익으로 인식되어 실제 투자자의 이익이 없거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피투자 사모펀드 수익률에 따른 선순위 수익률(예시)]

구분	수익률 구간 예시												
피투자 사모펀드 수익률	100%	50%	40%	30%	20%	10%	0%	-10%	-20%	-30%	-40%	-50%	-100%
선순위 수익률	60.8%	35.3%	30.2%	25.1%	20.0%	12.8%	0.0%	0.0%	0.0%	-10.7%	-23.5%	-36.2%	-100%

※ 상기 예시는 개별 피투자 사모펀드(1개)의 수익률에 따른 선순위 예상 수익률을 나타낸 것으로 사모투자재간접형 공모펀드에서 개별 피투자 사모펀드(1개)에 투자하는 투자 비중에 따라 사모투자재간접형 공모펀드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상기 예시는 피투자 사모펀드 운용사(GP)의 후순위 출자 비중 1.6%를 가정하여 작성된 것으로, 피투자 사모펀드 운용사(GP) 출자 비중에 따라 수익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피투자 사모펀드 수익률에 따른 KB 국민참여 정책형 뉴딜 펀드 수익률(예시)]

01 일부 펀드에서 원금 전액 손실 발생한 경우

사모펀드	사모펀드 수익률	선순위 수익률(A)	투자비중(B)	KB 국민참여 정책형 뉴딜 펀드 수익률 영향(A*B)
사모펀드1	0%	0%	14.3%	0%
사모펀드2	0%	0%	14.3%	0%
사모펀드3	0%	0%	14.3%	0%
사모펀드4	0%	0%	14.3%	0%
사모펀드5	-100%	-100%	14.3%	-14.3%
사모펀드6	-100%	-100%	14.3%	-14.3%
사모펀드7	-100%	-100%	14.3%	-14.3%
합계	-43%		100%	-43%

- 피투자 사모펀드 5~7의 경우 해당 펀드 후순위 원금을 초과하여 전액 손실 발생
- 이 경우 해당 펀드의 손실이 전액 사모투자재간접형 공모펀드 수익률에 영향

02 일부 펀드에서 후순위 한도 내 손실 발생 시

사모펀드	사모펀드 수익률	선순위 수익률(A)	투자비중(B)	KB 국민참여 정책형 뉴딜 펀드 수익률 영향(A*B)
사모펀드1	0%	0%	14.3%	0%
사모펀드2	0%	0%	14.3%	0%
사모펀드3	0%	0%	14.3%	0%
사모펀드4	0%	0%	14.3%	0%
사모펀드5	-10%	0%	14.3%	0%
사모펀드6	-10%	0%	14.3%	0%
사모펀드7	-10%	0%	14.3%	0%
합계	-4%		100%	0%

- 피투자 사모펀드 5~7의 경우 해당 펀드 후순위 원금 한도 내 손실 발생
- 이 경우 해당 펀드의 손실이 전액 후순위로 충당되어 사모투자재간접형 공모펀드 수익률에 영향 없음

03 피투자 사모펀드에서 이익 발생 시(수익률 다양한 경우)

사모펀드	사모펀드 수익률	선순위 수익률(A)	투자비중(B)	KB 국민참여 정책형 뉴딜 펀드 수익률 영향(A*B)
사모펀드1	80%	50.6%	14.3%	7.2%
사모펀드2	80%	50.6%	14.3%	7.2%
사모펀드3	80%	50.6%	14.3%	7.2%
사모펀드4	80%	50.6%	14.3%	7.2%
사모펀드5	10%	12.8%	14.3%	1.8%
사모펀드6	10%	12.8%	14.3%	1.8%
사모펀드7	10%	12.8%	14.3%	1.8%
합계	50%		100%	34.4%

- 피투자 사모펀드에서 기준수익 이상 성과 시 해당 초과수익 배분
- 피투자 사모펀드에서 기준수익 이하 성과 시 해당 수익 전액 선순위 배분

04 피투자 사모펀드에서 이익 발생 시(동일 수익률)

사모펀드	사모펀드 수익률	선순위 수익률(A)	투자비중(B)	KB 국민참여 정책형 뉴딜 펀드 수익률 영향(A*B)
사모펀드1	100%	60.8%	14.3%	8.7%
사모펀드2	100%	60.8%	14.3%	8.7%
사모펀드3	100%	60.8%	14.3%	8.7%
사모펀드4	100%	60.8%	14.3%	8.7%
사모펀드5	100%	60.8%	14.3%	8.7%
사모펀드6	100%	60.8%	14.3%	8.7%
사모펀드7	100%	60.8%	14.3%	8.7%
합계	100%		100%	60.8%

- 피투자 사모펀드가 기준수익 초과 달성 시 해당 초과수익분은 선순위(4):후순위(6) 안분

※ 상기 예시는 피투자 사모펀드 운용사(GP)의 후순위 출자 비중 1.6%를 가정하여 작성된 것으로, 피투자 사모펀드 운용사(GP) 출자 비중에 따라 수익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보수·회계감사비용(계약기간동안 약 5%수준 비용발생 예상) 등에 따라 펀드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기타 다양한 요인에 따라 상기 수익률 예시와 사모투자재간접형 공모펀드와의 수익률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투자 사모펀드가 수행하는 주요 전략(예시)]

- 상장주식 투자: KOSPI 및 KOSDAQ에 상장된 뉴딜 관련 기업 중 저평가, 고성장 주식에 투자하여 주가 상승에 따른 자본차익을 추구하는 전략
- 메자닌(Mezzanine) 투자: 투자 대상 기업이 발행한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전환상환우선주(RCPS)에 투자하여 채권으로부터 발생한 이자수익을 추구하며 주가 상승에 따른 주식전환 시 자본차익을 추구하는 전략
- 비상장주식(Pre-IPO) 투자: 유가증권시장에 상장이 예정되어 있거나 상장계획이 있는 주식을 장외에서 취득하여 상장 시 차익실현을 하거나 세컨더리 마켓을 통한 수익실현을 추구하는 전략
- 선순위대출(PDF): 대상기업에 지분이 아닌 대출과 채권으로 투자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전략으로, 국민참여 정책형 뉴딜펀드의 경우 인수금융을 위한 선순위 대출로 투자대상 한정

※ 상기 내용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할 수 있는 피투자 사모펀드의 주요 전략을 예시로 설명한 것으로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피투자 사모펀드는 일부 전략에 집중 투자할 수도 있고 여러 전략에 분산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피투자 사모펀드에 관한 사항(예시)]

-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7개 피투자 사모펀드는 현재 미설정 상태로, 설정 이후에는 정책형 뉴딜 펀드 투자 가이드라인에 따라 아래와 같은 운용사 별 뉴딜 투자 전략을 기본으로 하여 블라인드 방식(투자대상이 사전에 정해지지 않고 시황에 따라 투자대상 선별)으로 운용됩니다.
- 개별 피투자 사모펀드는 최대 약143억원 규모로 운용될 예정입니다.

- 피투자 사모펀드 개요

<table>
<tr><th>운용사</th><th>펀드명(가칭)</th><th>포트폴리오 구성방안</th></tr>
<tr><td>멀티에셋</td><td>멀티에셋 뉴딜 일반 사모투자신탁</td><td>- 주목적 투자전략: 신규 중심의 메자닌 투자전략
- 투자대상: Growth 및 Pre-IPO → 성장 잠재력이 높은 뉴딜 관련 기업 발굴 장 이후 메자닌 → 상장 이후 추가적인 자금 수요 발생 기업 발굴
- 투자형태: 회수 안정성이 높은 Mezzanine을 주력으로 투자, 투자 이후 이벤트(경영진 변경, M&A 등) 발생 대비한 통제 수단 마련(Tag-Along 등)
- 비주목적 투자전략: 구주 중심의 Pre-IPO 투자전략
- 회수 안정성이 높은 Mezzanine을 주력으로 투자, 딜소싱 환경 및 리스크 대비 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구주/신주 병행
- 주목적 투자비율
* 뉴딜 관련 기업: 60% 이상
* 뉴딜 관련 중소·중견 기업: 50% 이상
- 포트폴리오 운용계획(안)
<table>
<tr><th>구분</th><th>상장 주식</th><th>상장 메자닌</th><th>비상장 주식</th><th>비상장 메자닌</th></tr>
<tr><td>뉴딜 관련 기업</td><td rowspan="2">-</td><td>40~60 % 수준</td><td rowspan="2">-</td><td>40~60 % 수준</td></tr>
<tr><td>뉴딜 관련 중소·중견 기업</td><td>40~60 % 수준</td><td>40~60 % 수준</td></tr>
</table></td></tr>
</table>

<table>
<tr><td></td><td></td><td>
<table>
<tr><td colspan="5">섹터구분</td></tr>
<tr><td>건강관리장비와 서비스</td><td></td><td>20% 수준</td><td></td><td>20% 수준</td></tr>
<tr><td>기술하드웨어와 장비</td><td></td><td>20% 수준</td><td></td><td>20% 수준</td></tr>
<tr><td>디스플레이</td><td></td><td>20% 수준</td><td></td><td></td></tr>
<tr><td>자동차와부품</td><td></td><td></td><td></td><td>20% 수준</td></tr>
<tr><td>전기통신서비스</td><td></td><td>20% 수준</td><td></td><td>20% 수준</td></tr>
<tr><td>전자와 전기제품</td><td></td><td>20% 수준</td><td></td><td>20% 수준</td></tr>
</table>
</td></tr>
<tr><td>신한</td><td>신한 국민참여 정책형 뉴딜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2호</td><td>
- 상장사 지분(유상증자 및 신규자금 유입형태) 및 메자닌, 비상장사 지분(구주 포함) 및 메자닌성 자산에 주로 투자하되 뉴딜관련 인수금융 선후순위, 상장주식 및 상장지수 펀드에 일부 투자
- 투자 대상 발굴을 위해 Top-down 방식과 Bottom-up 방식을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신한금융그룹과의 시너지를 활용해 뉴딜 관련 기업을 발굴할 예정
-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10개를 중심으로 하여 총 28개의 세부과제에 해당하는 기업에 투자할 예정
- 주목적 투자비율
* 뉴딜 관련 기업: 60% 이상
* 뉴딜 관련 중소·중견 기업: 50% 이상
- 포트폴리오 운용계획(안)
<table>
<tr><th>구분</th><th>상장 주식</th><th>상장 메자닌</th><th>비상장 주식</th><th>비상장 메자닌</th><th>기타</th></tr>
<tr><td>뉴딜 관련 기업</td><td colspan="2">50% 이하 수준</td><td colspan="2">30% 이하 수준</td><td rowspan="2">40% 이하 수준</td></tr>
<tr><td>뉴딜 관련 중소·중견 기업</td><td colspan="2">70% 이하 수준</td><td colspan="2">50% 이하 수준</td></tr>
<tr><td colspan="6">섹터구분</td></tr>
<tr><td>건강관리장비와 서비스</td><td colspan="5">70% 이하 수준</td></tr>
<tr><td>기술하드웨어와 장비</td><td colspan="5">70% 이하 수준</td></tr>
<tr><td>디스플레이</td><td colspan="5">70% 이하 수준</td></tr>
<tr><td>반도체와 반도체 장비</td><td colspan="5">70% 이하 수준</td></tr>
<tr><td>상업서비스와 공급품</td><td colspan="5">70% 이하 수준</td></tr>
<tr><td>소재</td><td colspan="5">70% 이하 수준</td></tr>
<tr><td>자동차와 부품</td><td colspan="5">70% 이하 수준</td></tr>
<tr><td>자본재</td><td colspan="5">70% 이하 수준</td></tr>
<tr><td>전기통신서비스</td><td colspan="5">70% 이하 수준</td></tr>
<tr><td>전자와 전기제품</td><td colspan="5">70% 이하 수준</td></tr>
</table>
</td></tr>
</table>

<table>
<tr>
<td>에이원</td>
<td>에이원 뉴딜 메자닌 일반 사모 투자신탁</td>
<td>
- 상장사가 발행한 메자닌증권에 대해서 Case by Case로 검토하는 Bottom-Up 방식으로 투자 검토
- 채권의 안정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진 기업에 한하여 비즈니스 모델, 업종, 최대주주 및 주요 임원진 등의 정성적인 평가 진행
- 투자 회수는 메자닌증권 발행회사의 정성적, 정량적인 부분 검토 및 국내 주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 대표이사(CIO)와 담당 팀의 주관 하에 운용본부 전체 회의를 통해 회수 여부 결정
- 주목적 투자비율
* 뉴딜 관련 기업: 60% 이상
* 뉴딜 관련 중소·중견 기업: 50% 이상
- 포트폴리오 운용계획(안)
<table>
<tr><th>구분</th><th>상장 주식</th><th>상장 메자닌</th><th>비상장 주식</th><th>비상장 메자닌</th></tr>
<tr><td>뉴딜 관련 기업</td><td rowspan="2">20% 이내 수준</td><td rowspan="2">60% 이상 수준</td><td rowspan="2">10% 이내 수준</td><td rowspan="2">10% 이내 수준</td></tr>
<tr><td>뉴딜 관련 중소·중견 기업</td></tr>
<tr><td colspan="5">섹터구분</td></tr>
<tr><td>정보기술</td><td>5% 수준</td><td>35% 수준</td><td rowspan="3">5% 수준</td><td rowspan="3">5% 수준</td></tr>
<tr><td>커뮤니케이션서비스</td><td>5% 수준</td><td>5% 수준</td></tr>
<tr><td>건강관리</td><td>5% 수준</td><td>5% 수준</td></tr>
<tr><td>에너지</td><td rowspan="9">5% 수준</td><td rowspan="9">15% 수준</td><td rowspan="9">5% 수준</td><td rowspan="9">5% 수준</td></tr>
<tr><td>소재</td></tr>
<tr><td>산업재</td></tr>
<tr><td>자유소비재</td></tr>
<tr><td>필수소비재</td></tr>
<tr><td>금융</td></tr>
<tr><td>유틸리티</td></tr>
<tr><td>부동산</td></tr>
</table>
</td>
</tr>
<tr>
<td>파인밸류</td>
<td>파인밸류 성장뉴딜 PreIPO 9호 일반 사모투자신탁</td>
<td>
- 주목적 투자: 80% 이상
- 디지털, 환경 에너지 분야 비상장 기업에 2년 이상 메자닌 투자
- 투자 안정성 강화를 위해 일부 상장 기업 투자
- 비주목적 투자: 20% 이하
- 최대한 주목적 투자에 집중
- 신, 구주 패키지 딜: 신주 투자의 유인으로 구주 투자
- 주목적 투자비율
* 뉴딜 관련 기업: 80% 이상
* 뉴딜 관련 중소·중견 기업: 80% 이상
- 포트폴리오 운용계획(안)
<table>
<tr><th>구분</th><th>상장 주식</th><th>상장 메자닌</th><th>비상장 주식</th><th>비상장 메자닌</th></tr>
<tr><td>뉴딜 관련 기업</td><td rowspan="2">상장주식 및 비상장 주식 합계 20% 이내 수준</td><td>16% 미만 수준</td><td rowspan="2">상장주식 및 비상장 주식 합계 20% 이내 수준</td><td>64% 이상 수준</td></tr>
<tr><td>뉴딜 관련 중소·중견 기업</td><td>16% 미만 수준</td><td>64% 이상 수준</td></tr>
</table>
</td>
</tr>
</table>

<table>
<tr><td></td><td></td><td>
<table>
<tr><td>섹터구분</td><td></td><td></td><td></td><td></td></tr>
<tr><td>의료/정밀기기</td><td rowspan="4">상장주식 및 비상장 주식 합계 20% 이내 수준</td><td rowspan="2">8% 내외 수준</td><td rowspan="4">상장주식 및 비상장 주식 합계 20% 이내 수준</td><td>16% 내외 수준</td></tr>
<tr><td>IT H/W</td><td>16% 내외 수준</td></tr>
<tr><td>IT S/W</td><td rowspan="2">8% 내외 수준</td><td>16% 내외 수준</td></tr>
<tr><td>기타</td><td>16% 내외 수준</td></tr>
</table>
</td></tr>
<tr><td>밸류시스템</td><td>밸류시스템 뉴딜 2022 사모투자신탁</td><td>
- 코어전략(안정성): 글로벌 선도기업 및 본격 성장기업 메자닌 70% 투자
* 글로벌 선도기업: 뉴딜 관련 제품, 서비스 등을 이미 출시하여 향후 추가적으로 성장이 가능한 기업
* 본격 성장기업: 딜 관련 투자가 완료되어 본격적으로 성장을 앞두고 있는 기업
- 카운터 전략(수익성): 성장초기기업 및 신사업 진출 기업의 상장 메자닌, 비상장 주식 등에 30% 투자
* 성장 초기기업: 뉴딜 관련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본격적인 성장단계에 진입하지 못한 벤처기업
* 신사업 진출기업: 기존 사업 이외에 뉴딜 관련 분야로 본격적으로 진출하려는 기업
- 주목적 투자비율
* 뉴딜 관련 기업: 70% 이상
* 뉴딜 관련 중소·중견 기업: 70% 이상
- 포트폴리오 운용계획(안)
<table>
<tr><th>구분</th><th>상장 주식</th><th>상장 메자닌</th><th>비상장 주식</th><th>비상장 메자닌</th></tr>
<tr><td>뉴딜 관련 기업</td><td>5% 수준</td><td>60% 수준</td><td>10% 수준</td><td>10% 수준</td></tr>
<tr><td>뉴딜 관련 중소·중견 기업</td><td>2% 수준</td><td>48% 수준</td><td>10% 수준</td><td>10% 수준</td></tr>
<tr><td colspan="5">섹터구분</td></tr>
<tr><td>건강관리장비와 서비스</td><td>3% 수준</td><td>21% 수준</td><td>3% 수준</td><td>3% 수준</td></tr>
<tr><td>기술하드웨어와 장비</td><td>1% 수준</td><td>7% 수준</td><td>1% 수준</td><td>1% 수준</td></tr>
<tr><td>디스플레이</td><td>1% 수준</td><td>7% 수준</td><td>1% 수준</td><td>1% 수준</td></tr>
<tr><td>반도체와 반도체장비</td><td>1% 수준</td><td>7% 수준</td><td>1% 수준</td><td>1% 수준</td></tr>
<tr><td>상업서비스와 공급품</td><td>1% 수준</td><td>7% 수준</td><td>1% 수준</td><td>1% 수준</td></tr>
<tr><td>소재</td><td>1% 수준</td><td>7% 수준</td><td>1% 수준</td><td>1% 수준</td></tr>
<tr><td>자본재</td><td>1% 수준</td><td>7% 수준</td><td>1% 수준</td><td>1% 수준</td></tr>
<tr><td>전자와 전기제품</td><td>1% 수준</td><td>7% 수준</td><td>1% 수준</td><td>1% 수준</td></tr>
</table>
</td></tr>
</table>

<table>
<tr>
<td>디에스
(디지털)</td>
<td>디에스 DND 일반 사모투자신탁</td>
<td>- 디지털 뉴딜로 인해 변화될 핵심 요소들을 선정 후, 관련 핵심 산업과 기업을 선별하여 집중 투자 계획
* 디지털 뉴딜 정의: 데이터 활용도 혁신을 통한 전 산업의 생산성 향상 정책/경제 · 사회 Fundamental이 한 단계 상승될 것으로 전망
- 창업자 등 네트워크, 기존 포트폴리오 보유 기업, 투자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딜 소싱 계획
- 디지털 뉴딜 관련 비상장기업에 70%이내, 디지털 뉴딜 관련 상장기업에 30% 이상 투자할 계획
- 능동형 컴퓨팅, 지능형 데이터분석, 고부가 서비스, 차세대 무선통신 미디어, 스마트 헬스케어 섹터 등에 분산 투자 예정
- 주목적 투자비율
* 뉴딜 관련 기업: 100% 수준
* 뉴딜 관련 중소·중견 기업: 100% 수준
- 포트폴리오 운용계획(안)
<table>
<tr><th>구분</th><th>상장 주식</th><th>상장 메자닌</th><th>비상장 주식</th><th>비상장 메자닌</th></tr>
<tr><td>뉴딜 관련 기업</td><td rowspan="2">-</td><td rowspan="2">30% 이상 수준</td><td rowspan="2">70% 이내 수준</td><td rowspan="2">-</td></tr>
<tr><td>뉴딜 관련 중소·중견 기업</td></tr>
<tr><td colspan="5">섹터구분</td></tr>
<tr><td>능동형컴퓨팅</td><td></td><td colspan="2">20% 수준</td><td></td></tr>
<tr><td>지능형데이터분석</td><td></td><td colspan="2">20% 수준</td><td></td></tr>
<tr><td>고부가서비스</td><td></td><td colspan="2">20% 수준</td><td></td></tr>
<tr><td>차세대 무선통신미디어</td><td></td><td colspan="2">20% 수준</td><td></td></tr>
<tr><td>스마트헬스케어</td><td></td><td colspan="2">20% 수준</td><td></td></tr>
</table>
</td>
</tr>
<tr>
<td>디에스
(그린)</td>
<td>디에스 GND 일반 사모투자신탁</td>
<td>- 그린 뉴딜로 인해 변화될 핵심 요소들을 선정 후, 관련 핵심 산업과 기업을 선별하여 집중 투자 계획
* 그린 뉴딜 정의: 저탄소 경제로의 변화는 핵심 인프라 요소의 변화/환경적 목표 넘어, 혁명적 수준의 경제 혁신 야기할 정책
- 창업자 등 네트워크, 기존 포트폴리오 보유 기업, 투자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딜 소싱 계획
- 그린 뉴딜 관련 비상장기업에 70%이내, 그린 뉴딜 관련 상장기업에 30% 이상 투자할 계획
- 차세대 동력장치, 신재생에너지 및 친환경 발전, 에너지 저장 및 효율 향상, 환경개선 및 환경보호, 차세대 치료 등에 분산 투자 예정

- 주목적 투자비율
* 뉴딜 관련 기업: 100% 수준
* 뉴딜 관련 중소·중견 기업: 100% 수준
- 포트폴리오 운용계획(안)
<table>
<tr><th>구분</th><th>상장 주식</th><th>상장 메자닌</th><th>비상장 주식</th><th>비상장 메자닌</th></tr>
<tr><td>뉴딜 관련 기업</td><td>-</td><td>30% 이</td><td>70% 이</td><td>-</td></tr>
</table>
</td>
</tr>
</table>

		뉴딜 관련 중소·중견 기업		상 수준	내 수준	
		섹터구분				
		차세대 동력장치		20% 수준		
		차세대치료 등		20% 수준		
		환경개선 및 환경보호		20% 수준		
		신재생에너지 및 친환경발전		20% 수준		
		에너지 저장 및 효율향상		20% 수준		

※ 피투자 사모펀드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등의 내용은 해당 운용회사가 제공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시장상황의 변동이나 해당 운용회사 내부기준의 변경 또는 기타 사정에 의하여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kbam.co.kr)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kbam.co.kr)

| **수시공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kbam.co.kr)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가. 명칭: KB 국민참여 정책형 뉴딜 혼합자산 투자신탁 제2호(사모투자재간접형)

나. 종류

종류(클래스)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종류(클래스)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A	수수료선취-오프라인	DP287	C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DP288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혼합자산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폐쇄형(환매가 불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단위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불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표시

(1) 종류형(판매보수 및 수수료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투자신탁)

(2) **사모투자재간접**[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이와 유사한 집합투자기구로서 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 집합투자기구 포함)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투자신탁]

바.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X

※ 투자신탁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투자대상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의 내용 중 '투자대상'과 '투자전략'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1억좌(1좌=1,000원, 원본액 기준)

※ 다만, 모집(판매)기간 이후에는 추가모집을 하지 않습니다.

주1) 판매회사는 이 집합투자증권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1인당 투자금액 제한 등 가입제한 사항을 별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주2) 모집예정금액이 조기에 모두 판매되는 경우 모집이 조기에 마감됩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가. 모집기간: 2021년 11월 29일부터 2021년 12월 10일까지(판매회사에 따라 모집기간 단축 가능)

※ 상기 모집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정정신고하여 공시할 예정입니다.

나. 모집장소: 판매회사(KB국민은행 및 KB증권 등)의 본·지점

다. 모집 또는 배정절차 및 방법: 판매회사 영업일에 판매회사 창구를 통하여 모집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제2부의 내용 중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가. 투자신탁의 상장

이 투자신탁은 투자자에게 환금성 및 유동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신탁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증권시장에 상장할 예정입니다.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증권 상장 이후의 거래는 관련 규정을 적용하게 됩니다.

나. 상장요건

(1) 규모요건: 신탁의 원본액이 3억원 이상일 것

(2) 발행요건: 당해 집합투자증권이 모집 또는 매각에 의하여 발행되었을 것

(3) 1좌당 원본액: 1좌당 원본액이 500원 이상일 것

다. 상장폐지요건

(1) 규모요건: 신탁의 원본액이 3억원 미만이 되어 시장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탁기간의 만료 또는 전액 중도환수: 집합투자증권의 신탁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전액 환수된 경우

(3) 기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09조의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되거나 공익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거래소가 집합투자증권의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세칙에서 정하는 경우

구분	
상장시장 명칭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예정일	투자신탁 설정일로부터 90일 이내
거래방법	증권시장을 통한 경쟁매매

주1) 상기 상장요건 및 상장폐지 기준은 이 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현재 기준이며, 향후 증권시장의 필요에 따라 동 기준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2) 집합투자증권의 상장 이후 거래는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등을 적용받으며, 집합투자증권이 상장되더라도 거래량 부진 등의 사유로 투자자가 원하는 시기에 매매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환금성이 크게 제약 받을 수 있습니다.

주3) 이 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의 상장에 따른 상장수수료, 연부과금 등 제비용은 투자자의 부담으로 하며, 이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합니다.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가. 명칭: KB 국민참여 정책형 뉴딜 혼합자산 투자신탁 제2호(사모투자재간접형)

나. 종류

종류(클래스)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종류(클래스)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A	수수료선취-오프라인	DP287	C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DP288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날 짜	주 요 내 용
2021.12.13	최초설정
2022.06.30	운용전문인력 변경(책임: 정찬규 → 이덕주, 부책임: 이덕주/염보선 → 김세희)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가.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4년간으로 합니다.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시에는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투자신탁의 해지일까지로 합니다.

나. 가 목에도 불구하고 주된 투자대상자산인 집합투자증권 등이 신탁계약기간 종료일 이전에 전부 상환 또는 매각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그 상환금이 전부 회수되는 날의 15영업일 이내 중 집합투자업자가 정하여 공시하는 날까지로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제5부의 내용 중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가. 명칭: KB자산운용주식회사

나.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02-2167-8200)

※ 자세한 내용은 제4부의 내용 중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

가. 운용전문인력 현황

(2022년 06월 20일 기준)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펀드 연평균 수익률(재간접형)(%)				운용경력년수
			펀드수(개)	규모(억)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이덕주	1973년	책임	21	1,076	0.45	5.97	0.45	5.97	15년 7개월
김세희	1984년	부책임	23	5,963	-	-			9년 6개월

성명	주요 운용경력	성명	주요 운용경력
이덕주	매트라이프생명보험 재무지원팀 5년 2개월 신한생명보험 재무기획부변액보험운영팀 10개월 PCA생명보험 일반투자팀 10년 6개월 미래에셋생명보험 신탁팀 1년	김세희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상품관리팀 4년 8개월 블랙록자산운용 Investment 5년 피델리티자산운용 상품개발 3개월 KB자산운용 글로벌멀티에셋본부 4년 3개월

	KB자산운용 OCIO본부 3년 2개월 KB자산운용 글로벌멀티에셋본부 1개월		

※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글로벌멀티에셋본부가 공동운용하며, 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 상기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투자신탁의 명칭, 투자신탁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과보수가 약정된 투자신탁 운용규모: 해당사항 없음

※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나. 최근 3년간 책임운용전문인력 변동 사항

(2022년 06월 20일 기준)

성 명	운 용 기 간	비 고
정 찬 규	2021.12.13~2022.06.29	OCIO본부
이 덕 주	2022.06.30~현재	글로벌멀티에셋본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투자신탁, 혼합자산, 폐쇄형, 단위형, 종류형, 사모투자재간접

KB 국민참여 정책형 뉴딜 혼합자산 투자신탁 제2호(사모투자재간접형)

↓

사모 펀드1	사모 펀드2	사모 펀드3	사모 펀드4	사모 펀드5	사모 펀드6	사모 펀드7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사모펀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내용 중 [피투자 사모펀드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종류형 구조

-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투자신탁입니다. 투자신탁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클래스)		투자신탁의 특징
판매 수수료	수수료 선취(A)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3년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3년 3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증권입니다.
	수수료 미징구(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3년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3년 3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증권입니다.
판매 경로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증권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이 투자신탁은 법 제231조에 의거한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 투자신탁으로써 이 투자신탁이 보유한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류 (클래스)		가입자격	수수료			보수(연, %)			
			선취판매	후취판매	환매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사무관리회사
A	수수료선취-오프라인	제한없음	납입금액의 0.7%이내	-	-	0.400	0.350	0.015	0.015
C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제한없음	-	-		0.600			

※ 선취판매수수료율은 상기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 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습니다. 차등적용의 내용은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가입자격의 자세한 사항은 제2부의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의 종류별 가입 요건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는 투자신탁**입니다. 이 투자신탁은 정부가 주도하여 추진중인 한국판 뉴딜 펀드 중 정책형 뉴딜펀드에 해당하는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로, **한국판 뉴딜 정책과 관련된 기업에 투자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분산 투자하여 투자대상 자산의 가치상승 등에 따른 수익을 추구**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달성을 위해 한국성장금융이 국민참여 정책형 뉴딜펀드 설계 및 자문을 위한 협력 파트너로 공모펀드 운용사 5개사를 우선 선정하고 선정된 공모펀드 운용사와 공동으로 최종 피투자 사모펀드 운용사 6개사(7개 펀드)를 선정했습니다. 이때, 한국성장금융과 사모투자재간접형 공모펀드 5개 운용사는 포트폴리오 다양화 및 뉴딜 분야 투자 발굴을 위해 피투자 사모펀드 선정 시 운용사의 재무 건전성, 경영 안정성, 운용 인력의 투자성과, 뉴딜 분야 투자전략 등을 철저히 검증하고 최종적으로 투자대상 사모펀드 운용사를 선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내역
①	집합투자증권 등	50%초과 (※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50%초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9조 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및 이와 같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②	주식	50%미만	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 제15항 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등에 한한다)
③	채권	50%미만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을 제외한다)
④	어음	50%미만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예금증서(양도성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2-이상이어야 한다)
⑤	자산유동화증권	50%미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이하 "자산유동화증권"이라 한다)
⑥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기준) 10% 이하	법 제5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파생상품
⑦	환매조건부 매도	증권총액의 50%이하	
⑧	증권의 대여	증권총액의 50%이하	
⑨	증권의 차입	자산총액의 20%이하	
⑩	법 시행령 제26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의 활용을 위해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1.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한다)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 다음의 경우에는 위의 ①~⑤의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라 및 마의 경우에는 투자비율 적용예외기간을 15일 이내로 함
가.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1월간
나.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다.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라.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마. 집합투자재산인 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①~⑤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

※ 채권 및 어음 등 투자대상 자산의 신용등급이 ③ 및 ④에서 정한 신용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자산을 신용평가등급의 최초하락일로부터 3개월(이하 "처분기간"이라 한다) 이내 처분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다만, 처분기간 이내에 해당자산의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처분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나.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내용	적용예외

단기대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단기대출 및 환매조건부매매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증권	집합투자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①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 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 제1항의 외국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①의 본문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습니다.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법 제279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것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집합투자재산을 외화자산으로 70%이상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비슷한 것으로서 외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90%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라.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때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90%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행위 마.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의2호에 따른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가 같은 집합투자업자(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이와 유사한 집합투자기구로서 법 제279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행위 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한다)의 집	

	합투자증권이나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90%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②투자신탁재산으로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다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③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는 자산총액의 100%까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이와 유사한 집합투자기구로서 법 제279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④각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다만, 각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는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50%까지 투자할 수 있으며,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총수의 50%까지 투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⑤이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외국 투자매매업자를 포함한다) 또는 투자중개업자(외국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 시행령 제77조 제4항의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동일종목 투자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①~③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①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미만까지 투자하는 경우	
	②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①의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 목부터 사 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 목·마 목부터 사 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 목부터 사 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서 정하는 국가(중화인민공화국)이 발행한 채권,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31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사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 목부터 사 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 목부터 사 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③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 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 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한다.	
파생상품 투자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파생상품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법 시행령 제80조 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동일회사 및 계열회사가 발행한 주식에의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후순위채권 투자	집합투자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투자한도 적용의 유예	집합투자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다. 편입한 집합투자증권에 관한 사항: 이 투자신탁은 한국판 뉴딜 정책과 관련된 상장 및 비상장 중소·중견기업의 지분 및 메자닌 등에 투자하는 7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하 “피투자 사모펀드”라 한다)에 동일 비중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 피투자 사모펀드 개요

<table>
<tr><th>운용사</th><th>펀드명(가칭)</th><th>포트폴리오 구성방안</th></tr>
<tr><td>멀티에셋</td><td>멀티에셋 뉴딜 일반 사모투자신탁</td><td>- 주목적 투자전략: 신규 중심의 메자닌 투자전략
- 투자대상: Growth 및 Pre-IPO → 성장 잠재력이 높은 뉴딜 관련 기업 발굴 장 이후 메자닌 → 상장 이후 추가적인 자금 수요 발생 기업 발굴
- 투자형태: 회수 안정성이 높은 Mezzanine을 주력으로 투자, 투자 이후 이벤트(경영진 변경, M&A 등) 발생 대비한 통제 수단 마련(Tag-Along 등)
- 비주목적 투자전략: 구주 중심의 Pre-IPO 투자전략
- 회수 안정성이 높은 Mezzanine을 주력으로 투자, 딜소싱 환경 및 리스크 대비 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구주/신주 병행
- 주목적 투자비율
* 뉴딜 관련 기업: 60% 이상
* 뉴딜 관련 중소·중견 기업: 50% 이상
- 포트폴리오 운용계획(안)
<table>
<tr><th>구분</th><th>상장 주식</th><th>상장 메자닌</th><th>비상장 주식</th><th>비상장 메자닌</th></tr>
<tr><td>뉴딜 관련 기업</td><td rowspan="2">-</td><td>40~60 % 수준</td><td rowspan="2">-</td><td>40~60 % 수준</td></tr>
<tr><td>뉴딜 관련 중소·중견 기업</td><td>40~60 % 수준</td><td>40~60 % 수준</td></tr>
<tr><td colspan="5">섹터구분</td></tr>
<tr><td>건강관리장비와 서비스</td><td></td><td>20% 수준</td><td></td><td>20% 수준</td></tr>
<tr><td>기술하드웨어와 장비</td><td></td><td>20% 수준</td><td></td><td>20% 수준</td></tr>
<tr><td>디스플레이</td><td></td><td>20% 수준</td><td></td><td></td></tr>
<tr><td>자동차와 부품</td><td></td><td></td><td></td><td>20% 수준</td></tr>
<tr><td>전기통신서비스</td><td></td><td>20% 수준</td><td></td><td>20% 수준</td></tr>
<tr><td>전자와 전기제품</td><td></td><td>20% 수준</td><td></td><td>20% 수준</td></tr>
</table></td></tr>
<tr><td>신한</td><td>신한 국민참여 정책형 뉴딜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2호</td><td>- 상장사 지분(유상증자 및 신규자금 유입형태) 및 메자닌, 비상장사 지분(구주 포함) 및 메자닌성 자산에 주로 투자하되 뉴딜관련 인수금융 선후순위, 상장주식 및 상장지수 펀드에 일부 투자
- 투자 대상 발굴을 위해 Top-down 방식과 Bottom-up 방식을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신한금융그룹과의 시너지를 활용해 뉴딜 관련 기업을 발굴할 예정</td></tr>
</table>

<table>
<tr>
<td></td>
<td></td>
<td>
-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10개를 중심으로 하여 총 28개의 세부과제에 해당하는 기업에 투자할 예정
- 주목적 투자비율
* 뉴딜 관련 기업: 60% 이상
* 뉴딜 관련 중소·중견 기업: 50% 이상
- 포트폴리오 운용계획(안)
<table>
<tr><th>구분</th><th>상장 주식</th><th>상장 메자닌</th><th>비상장 주식</th><th>비상장 메자닌</th><th>기타</th></tr>
<tr><td>뉴딜 관련 기업</td><td colspan="2">50% 이하 수준</td><td colspan="2">30% 이하 수준</td><td rowspan="2">40% 이하 수준</td></tr>
<tr><td>뉴딜 관련 중소·중견 기업</td><td colspan="2">70% 이하 수준</td><td colspan="2">50% 이하 수준</td></tr>
<tr><td colspan="6">섹터구분</td></tr>
<tr><td>건강관리장비와 서비스</td><td colspan="5">70% 이하 수준</td></tr>
<tr><td>기술하드웨어와 장비</td><td colspan="5">70% 이하 수준</td></tr>
<tr><td>디스플레이</td><td colspan="5">70% 이하 수준</td></tr>
<tr><td>반도체와 반도체 장비</td><td colspan="5">70% 이하 수준</td></tr>
<tr><td>상업서비스와 공급품</td><td colspan="5">70% 이하 수준</td></tr>
<tr><td>소재</td><td colspan="5">70% 이하 수준</td></tr>
<tr><td>자동차와 부품</td><td colspan="5">70% 이하 수준</td></tr>
<tr><td>자본재</td><td colspan="5">70% 이하 수준</td></tr>
<tr><td>전기통신서비스</td><td colspan="5">70% 이하 수준</td></tr>
<tr><td>전자와 전기제품</td><td colspan="5">70% 이하 수준</td></tr>
</table>
</td>
</tr>
<tr>
<td>에이원</td>
<td>에이원 뉴딜 메자닌 일반 사모 투자신탁</td>
<td>
- 상장사가 발행한 메자닌증권에 대해서 Case by Case로 검토하는 Bottom-Up 방식으로 투자 검토
- 채권의 안정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진 기업에 한하여 비즈니스 모델, 업종, 최대주주 및 주요 임원진 등의 정성적인 평가 진행
- 투자 회수는 메자닌증권 발행회사의 정성적, 정량적인 부분 검토 및 국내 주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 대표이사(CIO)와 담당 팀의 주관 하에 운용본부 전체 회의를 통해 회수 여부 결정
- 주목적 투자비율
* 뉴딜 관련 기업: 60% 이상
* 뉴딜 관련 중소·중견 기업: 50% 이상
- 포트폴리오 운용계획(안)
<table>
<tr><th>구분</th><th>상장 주식</th><th>상장 메자닌</th><th>비상장 주식</th><th>비상장 메자닌</th></tr>
<tr><td>뉴딜 관련 기업</td><td rowspan="2">20% 이내 수준</td><td rowspan="2">60% 이상 수준</td><td rowspan="2">10% 이내 수준</td><td rowspan="2">10% 이내 수준</td></tr>
<tr><td>뉴딜 관련 중소·중견 기업</td></tr>
</table>
</td>
</tr>
</table>

<table>
<tr><td></td><td></td><td>
<table>
<tr><td colspan="5">섹터구분</td></tr>
<tr><td>정보기술</td><td>5% 수준</td><td>35% 수준</td><td rowspan="3">5% 수준</td><td rowspan="3">5% 수준</td></tr>
<tr><td>커뮤니케이션서비스</td><td>5% 수준</td><td>5% 수준</td></tr>
<tr><td>건강관리</td><td>5% 수준</td><td>5% 수준</td></tr>
<tr><td>에너지</td><td rowspan="9">5% 수준</td><td rowspan="9">15% 수준</td><td rowspan="9">5% 수준</td><td rowspan="9">5% 수준</td></tr>
<tr><td>소재</td></tr>
<tr><td>산업재</td></tr>
<tr><td>자유소비재</td></tr>
<tr><td>필수소비재</td></tr>
<tr><td>금융</td></tr>
<tr><td>유틸리티</td></tr>
<tr><td>부동산</td></tr>
</table>
</td></tr>
<tr><td>파인밸류</td><td>파인밸류 성장뉴딜 PreIPO 9호 일반 사모투자신탁</td><td>
- 주목적 투자: 80% 이상
- 디지털, 환경 에너지 분야 비상장 기업에 2년 이상 메자닌 투자
- 투자 안정성 강화를 위해 일부 상장 기업 투자
- 비주목적 투자: 20% 이하
- 최대한 주목적 투자에 집중
- 신, 구주 패키지 딜: 신주 투자의 유인으로 구주 투자
- 주목적 투자비율
* 뉴딜 관련 기업: 80% 이상
* 뉴딜 관련 중소·중견 기업: 80% 이상
- 포트폴리오 운용계획(안)
<table>
<tr><th>구분</th><th>상장 주식</th><th>상장 메자닌</th><th>비상장 주식</th><th>비상장 메자닌</th></tr>
<tr><td>뉴딜 관련 기업</td><td rowspan="2">상장주식 및 비상장 주식 합계 20% 이내 수준</td><td>16% 미만 수준</td><td rowspan="2">상장주식 및 비상장 주식 합계 20% 이내 수준</td><td>64% 이상 수준</td></tr>
<tr><td>뉴딜 관련 중소·중견 기업</td><td>16% 미만 수준</td><td>64% 이상 수준</td></tr>
<tr><td>섹터구분</td><td></td><td></td><td></td><td></td></tr>
<tr><td>의료/정밀기기</td><td rowspan="4">상장주식 및 비상장 주식 합계 20% 이내 수준</td><td rowspan="2"></td><td rowspan="4">상장주식 및 비상장 주식 합계 20% 이내 수준</td><td>16% 내외 수준</td></tr>
<tr><td>IT H/W</td><td>8% 내외 수준</td><td>16% 내외 수준</td></tr>
<tr><td>IT S/W</td><td>8% 내외 수준</td><td>16% 내외 수준</td></tr>
<tr><td>기타</td><td></td><td>16% 내외 수준</td></tr>
</table>
</td></tr>
<tr><td>밸류시스템</td><td>밸류시스템 뉴딜 2022 사모투자신탁</td><td>- 코어전략(안정성): 글로벌 선도기업 및 본격 성장기업 메자닌 70% 투자</td></tr>
</table>

<table>
<tr>
<td></td>
<td></td>
<td>* 글로벌 선도기업: 뉴딜 관련 제품, 서비스 등을 이미 출시하여 향후 추가적으로 성장이 가능한 기업
* 본격 성장기업: 딜 관련 투자가 완료되어 본격적으로 성장을 앞두고 있는 기업
- 카운터 전략(수익성): 성장초기기업 및 신사업 진출 기업의 상장 메자닌, 비상장 주식 등에 30% 투자
* 성장 초기기업: 뉴딜 관련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본격적인 성장단계에 진입하지 못한 벤처기업
* 신사업 진출기업: 기존 사업 이외에 뉴딜 관련 분야로 본격적으로 진출하려는 기업
- 주목적 투자비율
* 뉴딜 관련 기업: 70% 이상
* 뉴딜 관련 중소·중견 기업: 70% 이상
- 포트폴리오 운용계획(안)
<table>
<tr><th>구분</th><th>상장 주식</th><th>상장 메자닌</th><th>비상장 주식</th><th>비상장 메자닌</th></tr>
<tr><td>뉴딜 관련 기업</td><td>5% 수준</td><td>60% 수준</td><td>10% 수준</td><td>10% 수준</td></tr>
<tr><td>뉴딜 관련 중소·중견 기업</td><td>2% 수준</td><td>48% 수준</td><td>10% 수준</td><td>10% 수준</td></tr>
<tr><td colspan="5">섹터구분</td></tr>
<tr><td>건강관리장비와 서비스</td><td>3% 수준</td><td>21% 수준</td><td>3% 수준</td><td>3% 수준</td></tr>
<tr><td>기술하드웨어와 장비</td><td>1% 수준</td><td>7% 수준</td><td>1% 수준</td><td>1% 수준</td></tr>
<tr><td>디스플레이</td><td>1% 수준</td><td>7% 수준</td><td>1% 수준</td><td>1% 수준</td></tr>
<tr><td>반도체와 반도체장비</td><td>1% 수준</td><td>7% 수준</td><td>1% 수준</td><td>1% 수준</td></tr>
<tr><td>상업서비스와 공급품</td><td>1% 수준</td><td>7% 수준</td><td>1% 수준</td><td>1% 수준</td></tr>
<tr><td>소재</td><td>1% 수준</td><td>7% 수준</td><td>1% 수준</td><td>1% 수준</td></tr>
<tr><td>자본재</td><td>1% 수준</td><td>7% 수준</td><td>1% 수준</td><td>1% 수준</td></tr>
<tr><td>전자와 전기제품</td><td>1% 수준</td><td>7% 수준</td><td>1% 수준</td><td>1% 수준</td></tr>
</table>
</td>
</tr>
<tr>
<td>디에스
(디지털)</td>
<td>디에스 DND 일반 사모투자신탁</td>
<td>- 디지털 뉴딜로 인해 변화될 핵심 요소들을 선정 후, 관련 핵심 산업과 기업을 선별하여 집중 투자 계획
* 디지털 뉴딜 정의: 데이터 활용도 혁신을 통한 전 산업의 생산성 향상 정책/경제 · 사회 Fundamental이 한 단계 상승될 것으로 전망
- 창업자 등 네트워크, 기존 포트폴리오 보유 기업, 투자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딜 소싱 계획
- 디지털 뉴딜 관련 비상장기업에 70%이내, 디지털 뉴딜 관련 상장기업에 30% 이상 투자할 계획</td>
</tr>
</table>

<table>
<tr>
<td></td>
<td></td>
<td>
- 능동형 컴퓨팅, 지능형 데이터분석, 고부가 서비스, 차세대 무선통신 미디어, 스마트 헬스케어 섹터 등에 분산 투자 예정
- 주목적 투자비율
* 뉴딜 관련 기업: 100% 수준
* 뉴딜 관련 중소·중견 기업: 100% 수준
- 포트폴리오 운용계획(안)
<table>
<tr><th>구분</th><th>상장 주식</th><th>상장 메자닌</th><th>비상장 주식</th><th>비상장 메자닌</th></tr>
<tr><td>뉴딜 관련 기업</td><td rowspan="2">-</td><td rowspan="2">30% 이상 수준</td><td rowspan="2">70% 이내 수준</td><td rowspan="2">-</td></tr>
<tr><td>뉴딜 관련 중소·중견 기업</td></tr>
<tr><td colspan="5">섹터구분</td></tr>
<tr><td>능동형컴퓨팅</td><td></td><td colspan="2">20% 수준</td><td></td></tr>
<tr><td>지능형데이터분석</td><td></td><td colspan="2">20% 수준</td><td></td></tr>
<tr><td>고부가서비스</td><td></td><td colspan="2">20% 수준</td><td></td></tr>
<tr><td>차세대 무선통신미디어</td><td></td><td colspan="2">20% 수준</td><td></td></tr>
<tr><td>스마트헬스케어</td><td></td><td colspan="2">20% 수준</td><td></td></tr>
</table>
</td>
</tr>
<tr>
<td>디에스
(그린)</td>
<td>디에스 GND 일반 사모투자신탁</td>
<td>
- 그린 뉴딜로 인해 변화될 핵심 요소들을 선정 후, 관련 핵심 산업과 기업을 선별하여 집중 투자 계획
* 그린 뉴딜 정의: 저탄소 경제로의 변화는 핵심 인프라 요소의 변화/환경적 목표 넘어, 혁명적 수준의 경제 혁신 야기할 정책
- 창업자 등 네트워크, 기존 포트폴리오 보유 기업, 투자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딜 소싱 계획
- 그린 뉴딜 관련 비상장기업에 70%이내, 그린 뉴딜 관련 상장기업에 30% 이상 투자할 계획
- 차세대 동력장치, 신재생에너지 및 친환경 발전, 에너지 저장 및 효율 향상, 환경개선 및 환경보호, 차세대 치료 등에 분산 투자 예정

- 주목적 투자비율
* 뉴딜 관련 기업: 100% 수준
* 뉴딜 관련 중소·중견 기업: 100% 수준
- 포트폴리오 운용계획(안)
<table>
<tr><th>구분</th><th>상장 주식</th><th>상장 메자닌</th><th>비상장 주식</th><th>비상장 메자닌</th></tr>
<tr><td>뉴딜 관련 기업</td><td rowspan="2">-</td><td rowspan="2">30% 이상 수준</td><td rowspan="2">70% 이내 수준</td><td rowspan="2">-</td></tr>
<tr><td>뉴딜 관련 중소·중견 기업</td></tr>
<tr><td colspan="5">섹터구분</td></tr>
<tr><td>차세대 동력장치</td><td></td><td colspan="2">20% 수준</td><td></td></tr>
<tr><td>차세대치료 등</td><td></td><td colspan="2">20% 수준</td><td></td></tr>
</table>
</td>
</tr>
</table>

		환경개선 및 환경보호		20% 수준	
		신재생에너지 및 친환경발전		20% 수준	
		에너지 저장 및 효율향상		20% 수준	

※ 이 투자신탁이 편입한 타 집합투자기구의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내용 중 2) 상세투자전략[피투자 사모펀드에 관한 사항(예시), 피투자 사모펀드 운용사 개요 및 투자대상 피투자 사모펀드 상세],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내용 중 다. 피투자 사모펀드의 기준가격 산정 및 집합투자재산 평가방법 부분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전략

1) 투자 전략 개요

- 이 투자신탁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하 "피투자 사모펀드"라 한다)에 주로 투자하는 사모투자재간접형 공모펀드로서, 정부가 주도하는 한국판 뉴딜 정책과 관련된 상장 및 비상장 중소·중견기업의 지분, 메자닌 및 선순위 대출 등에 투자하는 7개의 피투자 사모펀드에 동일 비중으로 투자하여 투자자산의 가격 상승 등에 따른 수익을 추구합니다.
-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달성을 위해 한국성장금융이 국민참여 정책형 뉴딜 펀드 설계 및 자문을 위한 협력 파트너로 공모펀드 운용사 5개사를 우선 선정하고 선정된 공모펀드 운용사와 공동으로 최종 피투자 사모펀드 운용사 6개사(7개 펀드)를 선정했습니다.
- 한국성장금융과 사모투자재간접형 공모펀드 5개 운용사는 피투자 사모펀드 운용사 선정 시 재무 건전성, 경영 안정성, 운용 인력의 투자성과, 뉴딜 분야 투자전략 등을 철저히 검증하여 선정했습니다.
- 국내 뉴딜 관련 상장 및 비상장 기업의 지분, 메자닌 등에 주로 투자하는 피투자 사모펀드를 대상으로 정량적/정성적 분석을 통해 운용성과 및 위험관리가 우수한 펀드를 선별해 투자합니다.
-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피투자 사모펀드는 선순위·후순위 출자자에 대해 손익의 분배 또는 손익의 순위를 차등화하는 구조입니다. 또한, 투자대상 7개 피투자 사모펀드는 현재 미설정 상태로, 설정 이후에는 정책형 뉴딜 펀드 투자 가이드라인에 따른 운용사 별 뉴딜 투자 전략을 기본으로 투자하되, 투자대상 기업 등이 사전에 정해지지 않은 블라인드 방식으로 운용됩니다.

[한국판 뉴딜 펀드 추진 배경]

- 정부는 코로나 19 이후 경제여건 변화에 대비하여 디지털 및 그린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20.7.14)
  · '25년까지 재정으로 뉴딜분야에 총 사업비 160조원 투입 예정
-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정부재정뿐만 아니라 시중 유동성을 생산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뉴딜펀드 조성 추진
  · 1,000억원(국민자금 800억원 + 재정 후순위 200억원) 규모의 국민참여 뉴딜펀드 추가 조성 추진('21.9.10)

<한국판 뉴딜펀드 주요 내용>

구분	개요	유인구조	기대효과
정책형 뉴딜펀드	- 5년간 20조원 조성 * 정부 3조원 + 정책금융 4조원 + 민간 13조원 - 뉴딜 프로젝트, 뉴딜기업 투자·대출 등 다양한 형태로 투자, 사모투자재간접형 공모펀드 방식 활용하여 일반 국민 투자기회 제공	재정 출자를 통한 매칭 투자 및 투자위험 일부 우선 부담	뉴딜펀드의 선도적 역할 + 민간투자 유도 마중물 역할
뉴딜 인프라펀드	뉴딜 분야에 일정비율(예: 50%) 이상 투자하는 공모 인프라펀드 육성	세제 지원 *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투자금액 2억원 한도 내, 9%)	수익률 제고 + 뉴딜 인프라 투자 가속화
민간 뉴딜펀드	민간의 창의·자율성에 기반하여 자유롭게 펀드 조성	현장애로 해소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한 투자여건 조성	정부 선도투자에 이은 민간 후속투자 활성화 → 민간 뉴딜 생태계 구축

※ 상기 주요 내용은 정부가 발표한 정책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정부 정책의 변경 또는 기타 사정에 따라 실제 펀드 조성 및 투자 관련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한국판 뉴딜이란?

-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구조를 혁신하여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대규모 정부 정책 프로젝트로 디지털 혁신, 친환경 경제·사회 구축 및 사회 안정망 형성을 위해 2025년까지 160조원이 투자 될 예정

· 디지털 뉴딜: 대규모 ICT 인프라 구축 및 디지털 신산업 육성, 주력산업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경쟁력 강화

· 그린 뉴딜: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구축 및 친환경 산업의 경쟁력 강화

- 뉴딜 관련 기업: 정책형 뉴딜 펀드 투자 가이드라인 내 디지털 뉴딜 및 그린 뉴딜 분야에 속하는 D.N.A.(Data, Network, AI), 뉴딜 서비스, 친환경 녹색산업, 미래차·그린모빌리티, SOC·물류디지털, 스마트제조·스마트팜의 6대 핵심산업 분야에서 혁신을 이끄는 고부가가치 핵심기술 보유 또는 개발 중인 기업, 뉴딜 관련 벤처기업(AI기업, 친환경 기업 등)

[한국판 뉴딜 펀드 투자 구조]

- 이 투자신탁은 정부가 발표한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에 따른 3종(정책형 뉴딜펀드, 뉴딜 인프라펀드, 민간 뉴딜펀드)의 한국판 뉴딜펀드 중 정책형 뉴딜펀드로 1,000억원 규모가 추가조성됨에 따라 결성된 『국민참여 뉴딜펀드 제2호』에 해당하는 사모투자재간접형 공모펀드 입니다.
- 한국판 뉴딜 펀드는 한국판 뉴딜의 추진동력을 강력하게 뒷받침 하고,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생산적으로 흡수·활용하며 한국판 뉴딜 추진에 따른 성과를 국민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①정책형 뉴딜펀드(재정출자를 통한 투자위험 우선 부담) ②뉴딜 인프라펀드(파격적인 세제지원으로 인센티브 부여) ③민간 뉴딜펀드(수익성 있는 양질의 뉴딜 프로젝트 발굴·제시)의 다층적 구조로 설계된 정부 주도의 국민참여 정책형 펀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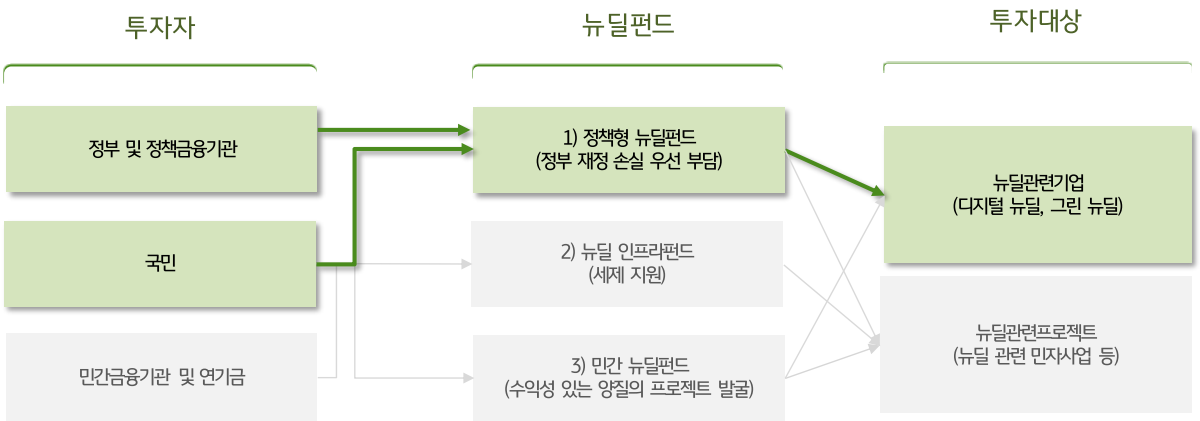

※ 이 투자신탁이 사모투자재간접형 공모펀드로 참여하는 정책형 뉴딜펀드는 정부·정책금융, 기관투자자, 국민 참여로 역할을 분담하여 펀드를 구성하게 됩니다. 정부재정의 후순위 출자 등을 통해 투자 위험을 일부 우선 부담해 투자 안정성을 제고하고 피투자 사모펀드 운용사는 정부의 투자 가이드라인을 통해 뉴딜 분야에 집중 투자하며 일반 국민의 사모투자재간접형 공모펀드 투자를 통해 뉴딜 투자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게 됩니다.

※ 이 투자신탁은 정부재정의 후순위 출자 등을 통해 투자위험을 우선 부담해주는 구조의 펀드로, 별도의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뉴딜 인프라 펀드가 아님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상세 투자 전략

- 이 투자신탁은 정부 주도의 한국판 뉴딜 정책 관련 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피투자 사모펀드에 선순위 출자자로 투자할 예정입니다.
-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피투자 사모펀드는 선순위·후순위 출자자에 대해 손익의 분배 또는 손익의 순위를 차등화하는 구조로 개별 피투자 사모펀드 손실 발생 시 후순위 출자자의 경우 일정 수준의 손실(약 20% 수준)을 우선 부담하는 동시에 기준수익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수익에 대해 일정 수준 수익을 더 많이 배분 받게 됩니다. 또한, 선순위 투자자의 경우 개별 피투자 사모펀드 손실 발생 시 후순위 출자자로 인해 일정 수준의 손실(약 20% 수준)을 방어 할 수 있게 되는 동시에 기준수익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수익에 대해 후순위 출자자가 배분 받는 수익 대비 더 적은 수익을 배분 받게 됩니다.

[국민참여 정책형 뉴딜 펀드 투자구조(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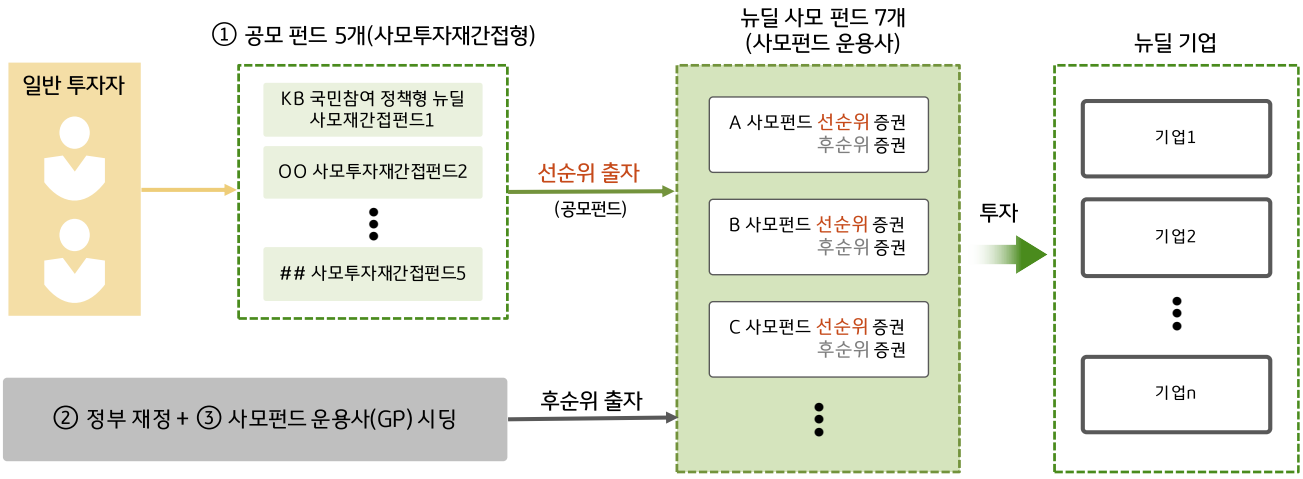

※ 피투자 사모펀드 출자금액은 사모투자재간접형 공모펀드 총 모집(판매)금액에서 유동성 및 보수 등 비용을 제외한 출자금액 기준으로, 실제 공모펀드 판매금액과 피투자 사모펀드에 최종적으로 출자하는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투자 사모펀드 출자 구조(예시)]

- 출자자 별 출자금액(142.9억원 기준)

구분	출자자	금액(억원)	비율
선순위 (1종)	사모투자재간접형 공모펀드	112.0	78.4%
후순위 (2종)	정부재정	28.6	20.0%
	사모펀드 운용사(GP)	2.3	1.6%
합계		142.9	100.0%

※ 7개 피투자 사모펀드에 출자하는 총 목표 결성금액은 1,000억원 규모로 개별 피투자 사모펀드에 142.9억원씩 출자를 가정함

※ 5개 사모투자재간접형 공모펀드의 출자금액이 당초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 정부 재정 출자금액 및 펀드 최소 결성금액은 사모투자재간접형 공모펀드 모집(판매) 목표금액 대비 출자금액 비율로 하향 조정 가능

[손익배분 구조(예시)]

- 선순위·후순위 출자구조에 따라 이익·손실을 구분하여 아래 순서에 따라 배분합니다.

손익	배분순서
이익	선순위 원금 → 후순위 원금 → 선순위 수익(기준수익*까지) → 후순위 수익(기준수익*까지) → 초과수익 안분**(선순위 4 : 후순위 6) * 기준수익: Multiple((회수총액/출자총액) - 1) = 20% ** 후순위내 안분 비율 - 재정 7 : 사모운용사 3
손실	후순위 원금 → 선순위 원금

※ 개별 피투자 사모펀드는 선순위·후순위 출자구조에 따라 이익과 손실을 차등하여 배분하는 구조로, 피투자 사모펀드의 손실이 후순위 출자자의 출자비율(약 20%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선순위 출자자인 사모투자재간접형 공모펀드에서도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후순위 출자자의 출자는 개별 피투자 사모펀드 기준으로 이루어지므로 후순위 출자자의 우선 손실 부담은 사모투자재간접형 공모펀드 기준으로 산정된 전체 손실의 약 20%를 우선 부담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별 피투자 사모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후순위 출자자가 우선 부담하는 금액은 선순위 출자자의 과세대상 수익으로 인식되어 실제 투자자의 이익이 없거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피투자 사모펀드 수익률에 따른 선순위 수익률(예시)]

구분	수익률 구간 예시												
피투자 사모펀드 수익률	100%	50%	40%	30%	20%	10%	0%	-10%	-20%	-30%	-40%	-50%	-100%
선순위 수익률	60.8%	35.3%	30.2%	25.1%	20.0%	12.8%	0.0%	0.0%	0.0%	-10.7%	-23.5%	-36.2%	-100%

※ 상기 예시는 개별 피투자 사모펀드(1개)의 수익률에 따른 선순위 예상 수익률을 나타낸 것으로 사모투자재간접형 공모펀드에서 개별 피투자 사모펀드(1개)에 투자하는 투자 비중에 따라 사모투자재간접형 공모펀드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상기 예시는 피투자 사모펀드 운용사(GP)의 후순위 출자 비중 1.6%를 가정하여 작성된 것으로, 피투자 사모펀드 운용사(GP) 출자 비중에 따라 수익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피투자 사모펀드 수익률에 따른 KB 국민참여 정책형 뉴딜 펀드 수익률(예시)]

01 일부 펀드에서 원금 전액 손실 발생한 경우

사모펀드	사모펀드 수익률	선순위 수익률(A)	투자비중(B)	KB 국민참여 정책형 뉴딜 펀드 수익률 영향(A*B)
사모펀드1	0%	0%	14.3%	0%
사모펀드2	0%	0%	14.3%	0%
사모펀드3	0%	0%	14.3%	0%
사모펀드4	0%	0%	14.3%	0%
사모펀드5	-100%	-100%	14.3%	-14.3%
사모펀드6	-100%	-100%	14.3%	-14.3%
사모펀드7	-100%	-100%	14.3%	-14.3%
합계	-43%		100%	-43%

- 피투자 사모펀드 5~7의 경우 해당 펀드 후순위 원금을 초과하여 전액 손실 발생
- 이 경우 해당 펀드의 손실이 전액 사모투자재간접형 공모펀드 수익률에 영향

02 일부 펀드에서 후순위 한도 내 손실 발생 시

사모펀드	사모펀드 수익률	선순위 수익률(A)	투자비중(B)	KB 국민참여 정책형 뉴딜 펀드 수익률 영향(A*B)
사모펀드1	0%	0%	14.3%	0%
사모펀드2	0%	0%	14.3%	0%
사모펀드3	0%	0%	14.3%	0%
사모펀드4	0%	0%	14.3%	0%
사모펀드5	-10%	0%	14.3%	0%
사모펀드6	-10%	0%	14.3%	0%
사모펀드7	-10%	0%	14.3%	0%
합계	-4%		100%	0%

- 피투자 사모펀드 5~7의 경우 해당 펀드 후순위 원금 한도 내 손실 발생
- 이 경우 해당 펀드의 손실이 전액 후순위로 충당되어 사모투자재간접형 공모펀드 수익률에 영향 없음

03 피투자 사모펀드에서 이익 발생 시(수익률 다양한 경우)

사모펀드	사모펀드 수익률	선순위 수익률(A)	투자비중(B)	KB 국민참여 정책형 뉴딜 펀드 수익률 영향(A*B)
사모펀드1	80%	50.6%	14.3%	7.2%
사모펀드2	80%	50.6%	14.3%	7.2%
사모펀드3	80%	50.6%	14.3%	7.2%
사모펀드4	80%	50.6%	14.3%	7.2%
사모펀드5	10%	12.8%	14.3%	1.8%
사모펀드6	10%	12.8%	14.3%	1.8%
사모펀드7	10%	12.8%	14.3%	1.8%
합계	50%		100%	54.4%

- 피투자 사모펀드에서 기준수익 미상 성과 시 해당 초과수익 배분
- 피투자 사모펀드에서 기준수익 이하 성과 시 해당 수익 전액 선순위 배분

04 피투자 사모펀드에서 이익 발생 시(동일 수익률)

사모펀드	사모펀드 수익률	선순위 수익률(A)	투자비중(B)	KB 국민참여 정책형 뉴딜 펀드 수익률 영향(A*B)
사모펀드1	100%	60.8%	14.3%	8.7%
사모펀드2	100%	60.8%	14.3%	8.7%
사모펀드3	100%	60.8%	14.3%	8.7%
사모펀드4	100%	60.8%	14.3%	8.7%
사모펀드5	100%	60.8%	14.3%	8.7%
사모펀드6	100%	60.8%	14.3%	8.7%
사모펀드7	100%	60.8%	14.3%	8.7%
합계	100%		100%	60.8%

- 피투자 사모펀드가 기준수익 초과 달성 시 해당 초과수익분은 선순위(4):후순위(6) 안분

※ 상기 예시는 피투자 사모펀드 운용사(GP)의 후순위 출자 비중 1.6%를 가정하여 작성된 것으로, 피투자 사모펀드 운용사(GP) 출자 비중에 따라 수익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보수·회계감사비용(계약기간동안 약 5%수준 비용발생 예상) 등에 따라 펀드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기타 다양한 요인에 따라 상기 수익률 예시와 사모투자재간접형 공모펀드와의 수익률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투자 사모펀드 선정 기준 및 조건]

- 한국성장금융이 국민참여 정책형 뉴딜 펀드 설계 및 자문을 위한 협력 파트너로 공모펀드 운용사 5개사를 우선 선정하고 선정된 공모펀드 운용사와 공동으로 최종 피투자 사모펀드 운용사 6개사(7개 펀드)를 선정했습니다.
- 한국성장금융과 사모투자재간접형 공모펀드 5개 운용사는 피투자 사모펀드 운용사 선정 시 재무 건전성, 경영 안정성, 운용 인력의 투자성과, 뉴딜 분야 투자전략 등을 철저히 검증하여 선정했습니다.
- ’21.09.30 현재 주식, 혼합주식, 혼합채권, 혼합자산 합산 설정액이 최소 500억원 이상이면서, 아래 a) 또는 b)를 충족하는 회사를 선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a) 메자닌형 펀드*의 총 설정액이 200억원 이상인 회사
  b) 평가기준일 기준 최근1년간 메자닌형 펀드*의 평균 설정액이 150억원 이상인 회사
  * 메자닌형 펀드: 펀드의 주요 운용전략으로 메자닌 전략을 활용하는 펀드
- 투자경력 평균이 4년 이상인 핵심운용인력 총 1인 이상 참여
- 최종 선정 피투자 사모펀드 운용사: 총 6개 운용사, 7개 펀드(멀티에셋, 신한, 에이원, 파인밸류, 밸류시스템, 디에스(복수))

[피투자 사모펀드 선정 프로세스]

- 투자전략, 운용역량, 위험관리, 내부통제, 재무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량·정성적 분석을 통해 피투자 사모펀드를 최종 선별하며 최종 선정된 7개 펀드를 동일 비중으로 편입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투자 프로세스>

프로세스	주체	내용
사모펀드 1차 평가(정량)	외부평가사 (한국펀드평가)	▪ 1차 정량평가항목은 한국성장금융 및 공모운용사와 협의하에 진행 ▪ 주요 평가항목 : 경영안정성, 운용성과, 운용인력 등
사모펀드 1차평가(정성)	공모펀드운용사(5개사), 한국성장금융	▪ 투자전략 및 참여인력 역량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평가
1차 평가 완료	서류평가심사위원회 (한국성장금융2인, 공모운용사 5인)	▪ 정량평가(60%), 정성평가 (40%) 비율로 점수화
현장실사	공모펀드운용사(5개사), 한국성장금융	▪ 1차 심사를 통과한 펀드를 대상으로 실사 진행 ▪ 해당 운용사의 제안내용과 실제 운용상의 차이 점검. 시스템 및 조직관련 현황 점검
사모펀드 2차 평가(구술)	제안심사위원회 (한국성장금융 및 공모운용사)	▪ 제안내용에 대한 PT 및 Q&A 진행 ▪ 주요 평가 요소 : 투자 목적 및 위험관리방안의 적정성 등
사모펀드 최종 선정	제안심사위원회 (한국성장금융 및 공모운용사)	▪ 1차 (정량 60점+정성 40점) 및 2차(제안 100점)를 합산하여 평가 ▪ 최종 7개 펀드를 사모펀드로 선정
투자 실행	공모운용사	▪ 선정된 사모펀드에 동일 비율(1/7)로 투자
모니터링	한국성장금융, 공모운용사	▪ 사모펀드 투자 건 및 운용상 특이사항 정기/비정기 모니터링 실행

[피투자 사모펀드의 투자대상]

- 뉴딜 관련주, 상장주 및 비상장주 중소 · 중견기업에 아래와 같이 투자합니다.
  - · 뉴딜 관련 기업에 목표 결성금액의 60% 이상 투자
  - · 뉴딜 관련 중소·중견기업에 목표 결성금액의 50% 이상 투자

※ 중소·중견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을 의미함

- 주목적 투자대상 예시
  - · 뉴딜관련 상장기업의 지분(유상증자 등 신규 자금 유입 형태의 투자에 한정하며, 상장주식 매수 및 IPO 공모주 투자 제외) 및 메자닌(세컨더리 포함)
  - · 뉴딜관련 비상장기업의 지분(구주 포함) 및 메자닌(세컨더리 포함)
  - · 뉴딜관련 인수금융 용도 선순위 대출(PDF)

※ 단, 비주목적 투자로 상장주식, 상장지수펀드, 상장사 메자닌(세컨더리) 등은 일정한도 내에서 수익률 제고, 유동성 관리 등을 위해 존속기간까지 투자가능

※ 상장기업(유가시장, 코스닥시장 상장)의 경우, 한국거래소가 지정한 관리종목 및 투자유의종목, 불공정매매, 시세조정 등 문제의 소지 또는 우려가 있는 종목은 운용대상에서 제외

※ 비상장주식의 경우 코넥스시장 상장기업, K-OTC 상장기업 포함

※ 위험관리 방안으로 필요 시 피투자 사모펀드의 주목적 투자에 관한 적정성 및 적합성 등의 검증을 시행할 수 있음

< 정책형 뉴딜펀드 투자 분야 >

디지털 뉴딜 (30개)	로봇, 항공·우주, 에너지효율향상, 스마트팜, 친환경소비재, 차세대 진단, 첨단영상진단, 맞춤형 의료, 스마트헬스케어, 첨단외과수술, 차세대 무선통신미디어, 능동형컴퓨팅, 실감형콘텐츠, 가용성강화, 지능형데이터분석, 소프트웨어, 차세대반도체, 감성형 인터페이스, 웨어러블디바이스, 차세대 컴퓨팅, 감각센서, 객체탐지, 광대역측정, 게임, 영화/방송/음악/애니메이션/캐릭터, 창작·공연·전시, 광고, 디자인, 고부가서비스, 핀테크

그린 뉴딜 (17개)	신제조공정, 로봇, 차세대동력장치, 바이오소재, 신재생에너지, 친환경발전, 에너지저장, 에너지효율향상, 스마트팜, 환경개선, 환경보호, 친환경소비재, 차세대치료, 실감형콘텐츠, 차세대반도체, 능동형조명, 객체탐지

※ 정책금융기관 등이 산업분야 별 전문가 델파이조사·리서치 등을 거쳐 미래 유망산업 분야를 선별한 공동 매뉴얼로 현재 성장지원펀드 등 투자운용사의 투자대상 선별 기준, 혁신성장 분야 자금지원 기준으로 활용 중

※ 투자 대상(기업, 프로젝트 등)이 투자 가이드라인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전·후방산업에도 투자하도록 하여 뉴딜펀드가 뉴딜생태계에 폭넓게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

※ (전방산업)뉴딜분야 및 품목을 활용한 프로젝트 또는 사업 영위 기업(도·소매, 단순 운송 등 제외), (후방산업)뉴딜분야 및 품목 관련 핵심 기술·소재·부품 관련 프로젝트 또는 사업 영위 기업(범용성 부품 제외)

[피투자 사모펀드가 수행하는 주요 전략(예시)]

- 상장주식 투자: KOSPI 및 KOSDAQ에 상장된 뉴딜 관련 기업 중 저평가, 고성장 주식에 투자하여 주가 상승에 따른 자본차익을 추구하는 전략
- 메자닌(Mezzanine) 투자: 투자 대상 기업이 발행한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전환상환우선주(RCPS)에 투자하여 채권으로부터 발생한 이자수익을 추구하며 주가 상승에 따른 주식전환 시 자본차익을 추구하는 전략
- 비상장주식(Pre-IPO) 투자: 유가증권시장에 상장이 예정되어 있거나 상장계획이 있는 주식을 장외에서 취득하여 상장 시 차익실현을 하거나 세컨더리 마켓을 통한 수익실현을 추구하는 전략
- 선순위 대출(PDF): 대상기업에 지분이 아닌 대출과 채권으로 투자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전략으로, 국민참여 정책형 뉴딜펀드의 경우 인수금융을 위한 선순위 대출로 투자대상 한정

※ 상기 내용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할 수 있는 피투자 사모펀드의 주요 전략을 예시로 설명한 것으로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피투자 사모펀드는 일부 전략에 집중 투자할 수도 있고 여러 전략에 분산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피투자 사모펀드에 관한 사항(예시)]

-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7 개 피투자 사모펀드는 현재 미설정 상태로, 설정 이후에는 정책형 뉴딜 펀드 투자 가이드라인에 따라 아래와 같은 운용사 별 뉴딜 투자 전략을 기본으로 하여 블라인드 방식(투자대상이 사전에 정해지지 않고 시황에 따라 투자대상 선별)으로 운용됩니다.
- 개별 피투자 사모펀드는 최대 약 143 억원 규모로 운용될 예정입니다.

- 피투자 사모펀드 운용사 개요 및 투자대상 피투자 사모펀드 상세

① 멀티에셋 뉴딜 일반 사모투자신탁

<table>
<tr><th>구분</th><th>주요 내용</th></tr>
<tr><td>운용사 개요</td><td>
<table>
<tr><th>운용사명</th><th>설립일</th><th>대표이사</th><th>자기자본</th><th>수탁고</th><th>임직원수</th></tr>
<tr><td>멀티에셋자산운용</td><td>1996.05.13</td><td>남기천, 권순학</td><td>673 억원</td><td>10 조 5,873 억원</td><td>74 명</td></tr>
</table>
* 자기자본 및 수탁고는 2020 년 12 월 31 일 기준. 임직원수는 2021 년 9 월말 기준
</td></tr>
<tr><td>핵심운용인력</td><td>
<table>
<tr><th>성명</th><th>주요 경력</th></tr>
<tr><td>정의철 상무</td><td>· 멀티에셋자산운용(정책펀드팀, 상품전략팀), KGI 증권 금융상품부</td></tr>
</table>
</td></tr>
<tr><td>투자전략 및 투자비중</td><td>- 주목적 투자전략: 신규 중심의 메자닌 투자전략
- 투자대상: Growth 및 Pre-IPO → 성장 잠재력이 높은 뉴딜 관련 기업 발굴 장 이후 메자닌 → 상장 이후 추가적인 자금 수요 발생 기업 발굴</td></tr>
</table>

- 투자형태: 회수 안정성이 높은 Mezzanine을 주력으로 투자, 투자 이후 이벤트(경영진 변경, M&A 등) 발생 대비한 통제 수단 마련(Tag-Along 등)
- 비주목적 투자전략: 구주 중심의 Pre-IPO 투자전략
- 회수 안정성이 높은 Mezzanine을 주력으로 투자, 딜소싱 환경 및 리스크 대비 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구주/신주 병행
- 주목적 투자비율

* 뉴딜 관련 기업: 60% 이상

* 뉴딜 관련 중소·중견 기업: 50% 이상

- 포트폴리오 운용계획(안)

구분	상장 주식	상장 메자닌	비상장 주식	비상장 메자닌
뉴딜 관련 기업	-	40~60% 수준	-	40~60% 수준
뉴딜 관련 중소·중견 기업		40~60% 수준		40~60% 수준
섹터구분				
건강관리장비와 서비스		20% 수준		20% 수준
기술하드웨어와 장비		20% 수준		20% 수준
디스플레이		20% 수준		
자동차와 부품				20% 수준
전기통신서비스		20% 수준		20% 수준
전자와 전기제품		20% 수준		20% 수준

총보수율(연)	펀드 NAV의 0.9%
리스크 관리 및 모니터링	- 사전관리 · 상품개발단계에서의 잠재리스크 사전검토: 위험 요소 정의, 시뮬레이션, 위험 한도 설정 · 관리 프로세스 마련: 벤치마크 결정, 투자유니버스 구성, 평가 기준 마련 · 문서화: 규약/투자설명서/운용지침 등에 운용방식 및 위험 고지 - 중간관리 · 모니터링: 사전 위험 한도, 시장 위험지표, 내부 위험관리기준, 운용성과 분석 · 매매모니터링: 불건전매매 사전 차단 · 위반의 조치: 위반 시 매니저 통보, 사유서 징구 및 조치 · 리스크 관리 교육 - 사후관리 · 자산운용위원회: 위험 반영 성과평가, 운용전략의 변경, 유예기준 마련 · 리스크관리 위원회: 중요 위반사항에 대한 인사위원회 회부 · 관리프로세스 개선 · 내부정기감사

② 신한 국민참여 정책형 뉴딜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 2 호

<table>
<tr><th>구분</th><th>주요 내용</th></tr>
<tr><td>운용사 개요</td><td>
<table>
<tr><th>운용사명</th><th>설립일</th><th>대표이사</th><th>자기자본</th><th>수탁고</th><th>임직원수</th></tr>
<tr><td>㈜신한자산운용</td><td>1996.08.26</td><td>이창구</td><td>1,706 억원</td><td>58 조6,780 억원</td><td>231 명</td></tr>
</table>
* 자기자본 및 수탁고는 2020 년 12 월 31 일 기준. 임직원수는 2021 년 9 월말 기준
</td></tr>
<tr><td>핵심운용인력</td><td>
<table>
<tr><th>성명</th><th>주요 경력</th></tr>
<tr><td>장성수 이사</td><td>신한은행(투자금융부), KPMG</td></tr>
<tr><td>최은주 부장</td><td>SH 자산운용 Mezzanine Fund 설립 TFT, 마케팅본부</td></tr>
</table>
</td></tr>
<tr><td>투자전략 및 투자비중</td><td>
- 상장사 지분(유상증자 및 신규자금 유입형태) 및 메자닌, 비상장사 지분(구주 포함) 및 메자닌성 자산에 주로 투자하되 뉴딜관련 인수금융 선후순위, 상장주식 및 상장지수 펀드에 일부 투자
- 투자 대상 발굴을 위해 Top-down 방식과 Bottom-up 방식을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신한금융그룹과의 시너지를 활용해 뉴딜 관련 기업을 발굴할 예정
-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10개를 중심으로 하여 총 28개의 세부과제에 해당하는 기업에 투자할 예정
- 주목적 투자비율
* 뉴딜 관련 기업: 60% 이상
* 뉴딜 관련 중소·중견 기업: 50% 이상
- 포트폴리오 운용계획(안)
<table>
<tr><th>구분</th><th>상장 주식</th><th>상장 메자닌</th><th>비상장 주식</th><th>비상장 메자닌</th><th>기타</th></tr>
<tr><td>뉴딜 관련 기업</td><td colspan="2">50% 이하 수준</td><td colspan="2">30% 이하 수준</td><td rowspan="2">40% 이하 수준</td></tr>
<tr><td>뉴딜 관련 중소·중견 기업</td><td colspan="2">70% 이하 수준</td><td colspan="2">50% 이하 수준</td></tr>
<tr><td colspan="6">섹터구분</td></tr>
<tr><td>건강관리장비와 서비스</td><td colspan="5">70% 이하 수준</td></tr>
<tr><td>기술하드웨어와 장비</td><td colspan="5">70% 이하 수준</td></tr>
<tr><td>디스플레이</td><td colspan="5">70% 이하 수준</td></tr>
<tr><td>반도체와 반도체장비</td><td colspan="5">70% 이하 수준</td></tr>
<tr><td>상업서비스와 공급품</td><td colspan="5">70% 이하 수준</td></tr>
<tr><td>소재</td><td colspan="5">70% 이하 수준</td></tr>
<tr><td>자동차와 부품</td><td colspan="5">70% 이하 수준</td></tr>
<tr><td>자본재</td><td colspan="5">70% 이하 수준</td></tr>
<tr><td>전기통신서비스</td><td colspan="5">70% 이하 수준</td></tr>
<tr><td>전자와 전기제품</td><td colspan="5">70% 이하 수준</td></tr>
</table>
</td></tr>
<tr><td>총보수율(연)</td><td>펀드 NAV 의 0.9%</td></tr>
<tr><td>리스크 관리 및 모니터링</td><td>
[리스크 관리 방안]
집합투자업자는 투자대상 자산의 시장위험(Market Risk), 신용위험(Credit Risk), 유동성 위험(Liquidity Risk)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위험관리방법을 실행합니다
- 투자의사결정 단계
· 투자의사 결정 시 예비 심사, 본 심사를 통해 진행되며 투자 의사결정의 최종 의결 기구인 투자
</td></tr>
</table>

	심의위원회에서 구성 위원의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함으로써 투자 의사 결정 단계에서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 다단의 투자 시스템 구축 · 집합투자업자 내부 뿐만 아니라 필요시 실사 용역 등을 통해 외부 전문 자문 기관의 자문을 수행함으로써 예측 가능한 리스크에 대하여 투자의사결정시 통제 및 관리 - 투자 후 운용 및 회수 단계 · 시장리스크: 금리, 주가, 환율 등의 금융 변수 변화에 따른 시장가격 변동과 관련된 리스크로, Stress Test, Stock-Allocation, 개별 투자자산의 상시 모니터링 강화로 시장 리스크 통제 관리 · 신용리스크: 부도, 신용상태 악화 등에 의한 계약/의무 지연 또는 불이행에 따른 리스크로 Credit에 대한 신용등급별 분포 모니터링, 우량 신용등급 이하 등급의 자산에 대한 추가적인 지표 확인을 통한 모니터링, 동일인 투자한도 신용한도 준수 점검, 개별 투자자산의 상시 모니터링 강화로 신용리스크 통제 관리 · 유동성리스크: 투자자산에 대한 부채비율/유동성비율 등 모니터링, 만기구간별 Credit 점검, 종목별 보유한도 점검, 펀드 유동성 점검, 상시 모니터링 강화 [모니터링 관리 방안] - 주기적인 모니터링 여부 및 제공 내역 · 매 월: 신탁재산명세부(포트폴리오 투자 내역) 매 월말 기준 제공 · 매 분기: 운용보고서 매 분기말 기준 제공 · Event 발생 시: Flash Info 등 대응 전략 제공 · 수시: 투자자 요청시 제공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시 제공 - 운용보고서 주요 기재 내용 ·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 부채 및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 · 직전의 기준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율 등

③ 에이원 뉴딜 메자닌 일반 사모투자신탁

구분	주요 내용
운용사 개요	운용사명 / 설립일 / 대표이사 / 자기자본 / 수탁고 / 임직원수 에이원자산운용 / 2015.03.03 / 선형렬 / 72 억원 / 3,775 억원 / 17 명 * 자기자본 및 수탁고는 2020 년 12 월 31 일 기준. 임직원수는 2021 년 9 월말 기준
핵심운용인력	성명 / 주요 경력 선형렬 대표이사 / KTB 자산운용 전략투자팀
투자전략 및 투자비중	- 상장사가 발행한 메자닌증권에 대해서 Case by Case 로 검토하는 Bottom-Up 방식으로 투자 검토 - 채권의 안정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진 기업에 한하여 비즈니스 모델, 업종, 최대주주 및 주요 임원진 등의 정성적인 평가 진행 - 투자 회수는 메자닌증권 발행회사의 정성적, 정량적인 부분 검토 및 국내 주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 대표이사(CIO)와 담당 팀의 주관 하에 운용본부 전체 회의를 통해 회수 여부 결정

- 주목적 투자비율

* 뉴딜 관련 기업: 60% 이상

* 뉴딜 관련 중소·중견 기업: 50% 이상

- 포트폴리오 운용계획(안)

구분	상장 주식	상장 메자닌	비상장 주식	비상장 메자닌
뉴딜 관련 기업	20% 이내 수준	60% 이상 수준	10% 이내 수준	10% 이내 수준
뉴딜 관련 중소·중견 기업				
섹터구분				
정보기술	5% 수준	35% 수준	5% 수준	5% 수준
커뮤니케이션서비스	5% 수준	5% 수준		
건강관리	5% 수준	5% 수준		
에너지	5% 수준	15% 수준	5% 수준	5% 수준
소재				
산업재				
자유소비재				
필수소비재				
금융				
유틸리티				
부동산				

총보수율(연)	펀드 NAV 의 0.9%
리스크 관리 및 모니터링	1) 당사는 종목 편입 후 주기적으로 발행회사를 방문하여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관계로, 기한 이익 상실에 대한 징후가 보이거나 우려 시 적극적인 재무건전성과 자본조달 등에 대하여 조언하고, 당사의 증권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있음. 또한 부실자산 발생 전, 사전적으로 대응하여 펀드 운용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2) 사전 리스크관리 프로세스

구분	내용
1) 투자 물건 발굴 및 내부 심사	- 증권사 IB, 자산운용, PE, VC 등의 네트워크를 통한 양질의 투자 물건 발굴 촉구 - 종목별 담당 운용역을 배정하여 운용본부 전체의 기업분석 후 검토 여부 결정
2) 예비 실사	- 실사 전 주요 자료 징구에 따른 면밀 검토 - 시장 정보, 공시 자료 등 확인을 통한 사전 검토
3) 예비투자심의위원회	- 담당 운용역 주최로 운용본부 전체 회의 실시
4) 정밀 실사	- 대상 기업 본사, 주요 공장 방문 - 주요 임직원 심층 미팅을 통한 재무, 운영 등 주요 리스크 체크 - 자료 요청 및 자료 분석
5) 리스크 검토	- 실사 과정에서 논의된 리스크 심화 검토 (준법감시인 또는 위험관리책임자 동반)

6) 투자심의위원회	- 투자심의위원회 위원: 대표이사(CIO겸임), 마케팅본부장, CRO(위험관리 책임자) - 투자심의위원회 위원과 운용본부, 준법감시인이 참여하여 투자심사보고서와 징구 자료를 기초로 관련 계약서까지 총괄적인 투자 심의 진행을 통한 리스크 심사
7) 리스크관리위원회	- 월별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를 통한 총체적 리스크 점검 실시 - 이벤트 발생 시, 시나리오 별 대응책 마련 및 사후 조치/평가 실시
8) 계약 및 집행	- 계약서 및 계약 내용 등에 대한 펀드 신탁업자와 참여기관의 법률 검토 완료 이후 계약 체결 - 계약서와 사전자산배분에 따른 자금 집행

3) 사후 리스크관리 프로세스

구분	내용
사후 관리	- 담당 운용역의 주기적인 기업 방문 - 주가 및 공시 사항 등 모니터링 - 적극적인 리스크 사전 파악 및 대응
기한 이익 상실 통지 공문 발송	- 기한 이익 상실 사유 발생 시 내용증명으로 공문 발송 - 발행회사의 기한 이익 상실과 채권자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 고지
발행회사 수시 방문	- 발행회사 수시 방문하여 재무 현황과 자금 수지 등 파악
물적 담보 가능 자산 파악	- 채권자로서 확보할 수 있는 물적 담보 가능 자산에 대해 파악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물적 담보를 설정함 - 부동산, 매출채권, 대여금, 임대차 보증금, 자회사 지분 등 외 최대주주의 자산에 대해서도 담보 설정 요구
상환 계획서 수령	- 발행회사에 구체적인 상환계획서를 요청 및 상환계획서 수령 시 실질적으로 이행가능한지 검토
내부 위원회 개최	- 발행회사의 현황과 향후 원리금 회수에 대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액 상각 절차 진행 - 상각 비율에 따라 기준가격에 손실이 반영됨
채권자협의회	- 공동 채권자가 있는 경우, 채권자 협의회를 소집 또는 참가하여 공동으로 대응 가능한 문제에 대해 협의
채권 보전 절차	- 민법상 채권자로서 행사할 수 있는 채권 보전 절차에 대한 실익 검토 - 법률대리인 선임 여부 검토 - 물적 담보 실행 여부 검토

④ 파인밸류 성장뉴딜 PreIPO 9 호 일반 사모투자신탁

<table>
<tr><th>구분</th><th>주요 내용</th></tr>
<tr><td>운용사 개요</td><td>
<table>
<tr><th>운용사명</th><th>설립일</th><th>대표이사</th><th>자기자본</th><th>수탁고</th><th>임직원수</th></tr>
<tr><td>파인밸류자산운용</td><td>2006.09.19</td><td>최호열</td><td>212 억원</td><td>3,301 억원</td><td>23 명</td></tr>
</table>
* 자기자본 및 수탁고는 2020 년 12 월 31 일 기준. 임직원수는 2021 년 9 월말 기준
</td></tr>
<tr><td>핵심운용인력</td><td>
<table>
<tr><th>성명</th><th>주요 경력</th></tr>
<tr><td>윤동현 이사</td><td>· 키움증권 기업금융팀, KB 증권 ECM 팀, 한국투자증권 기업금융부</td></tr>
</table>
</td></tr>
<tr><td>투자전략 및 투자비중</td><td>
- 주목적 투자: 80% 이상
- 디지털, 환경 에너지 분야 비상장 기업에 2 년 이상 메자닌 투자
- 투자 안정성 강화를 위해 일부 상장 기업 투자
- 비주목적 투자: 20% 이하
- 최대한 주목적 투자에 집중
- 신, 구주 패키지 딜: 신주 투자의 유인으로 구주 투자
- 주목적 투자비율
* 뉴딜 관련 기업: 80% 이상
* 뉴딜 관련 중소·중견 기업: 80% 이상
- 포트폴리오 운용계획(안)
<table>
<tr><th>구분</th><th>상장 주식</th><th>상장 메자닌</th><th>비상장 주식</th><th>비상장 메자닌</th></tr>
<tr><td>뉴딜 관련 기업</td><td rowspan="2">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 합계 20% 이내 수준</td><td>16% 미만 수준</td><td rowspan="2">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 합계 20% 이내 수준</td><td>64% 이상 수준</td></tr>
<tr><td>뉴딜 관련 중소·중견 기업</td><td>16% 미만 수준</td><td>64% 이상 수준</td></tr>
<tr><td>섹터구분</td><td></td><td></td><td></td><td></td></tr>
<tr><td>의료/정밀기기</td><td rowspan="4">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 합계 20% 이내 수준</td><td></td><td rowspan="4">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 합계 20% 이내 수준</td><td>16% 내외 수준</td></tr>
<tr><td>IT H/W</td><td>8% 내외 수준</td><td>16% 내외 수준</td></tr>
<tr><td>IT S/W</td><td>8% 내외 수준</td><td>16% 내외 수준</td></tr>
<tr><td>기타</td><td></td><td>16% 내외 수준</td></tr>
</table>
</td></tr>
<tr><td>총보수율(연)</td><td>펀드 NAV 의 0.9%</td></tr>
<tr><td>리스크 관리 및 모니터링</td><td>
[리스크 관리 방안]
- 투자전략은 전체적인 위험 수준에 따라 제한되고 있으며,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절차에 통하여 개별 투자 전략과 전체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평가
- 운용전반 리스크: 운영 전반에 걸쳐 법률리스크, 사무처리 오류리스크, 평판리스크, 약관위반 리스크 등
</td></tr>
</table>

	·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법령 및 컴플 위반사항 실시간 모니터링 및 검증 · 주기적인 교육 및 내부 컴플 시스템으로 임직원 윤리수준 및 업무능력 향상 - 투자시점 리스크: 계약관련 리스크, 밸류에이션 리스크, 펀드간 이해상충 리스크 등 · 계약서는 형태불문 준법감시인 승인, 필요시 법무법인 자문 의뢰 · 명확한 밸류에이션 산출근거, 이익가시성에 대한 심층분석 및 3단계 투심으로 투자 타당성 검증 · 제안서상 투자편입비중 준수 및 편입전 이해상충요소 확인 및 제거 · 실사 특이사항 투자조건 반영여부 검증 - 관리시점 리스크:Market 리스크(지수급락 등), Credit 리스크(신용도하락) 등 평가손실 발생 리스크 · 투자기업별 등급분류로 효율적인 사후관리 및 평가시스템 운영 분기별 사후관리보고 · 평가등급 하위기업은 밀착 사후관리로 선제적 발생방지 사후관리노력 · 리스크 부각 자산은 목표회수시점 전이라도 장내외매각 검토를 통해 선제적 시장 리스크 관리 - 회수시점 리스크 유동성 리스크(만기상환지연) · 편입시점 만기상황가능성에 대한 3단계 투심으로 유동성리스크 사전 차단 · 만기 미스매치 투자안 편입 금지. · 장외 매각, 내부 규정에 따른 크레딧 리스크발생시점 즉시평가감을 통해 만기상환 지연 리스크 해소 [모니터링 방안] 종합적이고 독자적인 시스템을 통하여 주요 포트폴리오 위험요인들을 일단위로 모니터링 - 사전 모니터링 · 펀드 설정 또는 제한사항 변경 시 약관의 내용 등을 AITAS 시스템에 입력 · 각 펀드별 사전자산배분 후 사전컴플라이언스 점검 수행, 위반 내용을 팝업으로 알려 자산배분을 수정하도록 하며, 동 과정을 통해 위반을 원천적으로 차단. 투자부적격 종목 매입 시 거래가 사전적으로 차단됨 - 사후 모니터링 및 통제 조치 · 일별로 전일의 매매결과에 대해 컴플라이언스 모니터링하고 점검사항 발생 시 준법감시인은 위한 현황을 첨부하여 일일 컴플라이언스 보고서 작성, 중요사항 대표이사 보고 · 위반 발생 시 투자부문장 및 해당 운용본부장에게 위반 통지 · 운용역은 위반사항에 대해 당일 시정을 원칙으로 함

⑤ 밸류시스템 뉴딜 2022 일반 사모투자신탁

구분	주요 내용
운용사 개요	운용사명: ㈜밸류시스템자산운용 설립일: 2009.08.17 대표이사: 양기정 자기자본: 104 억원 수탁고: 5,278 억원 임직원수: 29 명 * 자기자본 및 수탁고는 2020 년 12 월 31 일 기준. 임직원수는 2021 년 9 월말 기준
핵심운용인력	성명: 양기정 대표 주요 경력: 삼일회계법인, 밸류시스템자산운용 본부장
투자전략 및 투자비중	- 코어전략(안정성): 글로벌 선도기업 및 본격 성장기업 메자닌 70% 투자 * 글로벌 선도기업: 뉴딜 관련 제품, 서비스 등을 이미 출시하여 향후 추가적으로 성장이 가능한 기업

	* 본격 성장기업: 딜 관련 투자가 완료되어 본격적으로 성장을 앞두고 있는 기업 - 카운터 전략(수익성): 성장초기기업 및 신사업 진출 기업의 상장 메자닌, 비상장 주식 등에 30% 투자 * 성장 초기기업: 뉴딜 관련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본격적인 성장단계에 진입하지 못한 벤처기업 * 신사업 진출기업: 기존 사업 이외에 뉴딜 관련 분야로 본격적으로 진출하려는 기업 - 주목적 투자비율 * 뉴딜 관련 기업: 70% 이상 * 뉴딜 관련 중소·중견 기업: 70% 이상 - 포트폴리오 운용계획(안)

구분	상장 주식	상장 메자닌	비상장 주식	비상장 메자닌
뉴딜 관련 기업	5% 수준	60% 수준	10% 수준	10% 수준
뉴딜 관련 중소·중견 기업	2% 수준	48% 수준	10% 수준	10% 수준
섹터구분				
건강관리장비와 서비스	3% 수준	21% 수준	3% 수준	3% 수준
기술하드웨어와 장비	1% 수준	7% 수준	1% 수준	1% 수준
디스플레이	1% 수준	7% 수준	1% 수준	1% 수준
반도체와 반도체장비	1% 수준	7% 수준	1% 수준	1% 수준
상업서비스와 공급품	1% 수준	7% 수준	1% 수준	1% 수준
소재	1% 수준	7% 수준	1% 수준	1% 수준
자본재	1% 수준	7% 수준	1% 수준	1% 수준
전자와 전기제품	1% 수준	7% 수준	1% 수준	1% 수준

총보수율(연)	펀드 NAV 의 0.9%
리스크 관리 및 모니터링	- 당사에서는 리스크 관리 조직으로 위험관리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위험관리책임자는 투자대상자산에 대하여 위험 요소, EXIT 방안 등을 사전 검토하고 있습니다. - 또한, 위험관리책임자는 비상장 증권에 대해 투자 건별로 개최되는 투자심의위원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분기별로 개최되는 정기 위험관리위원회에서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위험등급, 주요 이슈, EXIT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투자대상자산에 대해 이슈 발생 시 수시 위험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슈에 대한 대응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 사무수탁사 시스템을 활용하여 수익률 및 투자경고 종목 등 이상 종목 발생 여부에 대해 일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리스크 관리 활동을 통해 운용인력에게 리스크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고 리스크 측면에서 기업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⑥ 디에스 DND 일반 사모투자신탁

구분	주요 내용
운용사 개요	

운용사명	설립일	대표이사	자기자본	수탁고	임직원수
디에스자산운용	2008.04.15	위윤덕	953 억원	1 조 3,560 억원	45 명

* 자기자본 및 수탁고는 2020 년 12 월 31 일 기준. 임직원수는 2021 년 9 월말 기준

<table>
<tr><td>핵심운용인력</td><td>
<table>
<tr><td>성명</td><td>주요 경력</td></tr>
<tr><td>박영진 팀장</td><td>· 메릴린치 증권 조사분석팀, 스팍스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td></tr>
</table>
</td></tr>
<tr><td>투자전략 및 투자비중</td><td>
- 디지털 뉴딜로 인해 변화될 핵심 요소들을 선정 후, 관련 핵심 산업과 기업을 선별하여 집중 투자 계획
* 디지털 뉴딜 정의: 데이터 활용도 혁신을 통한 전 산업의 생산성 향상 정책/경제 · 사회 Fundamental 이 한 단계 상승될 것으로 전망
- 창업자 등 네트워크, 기존 포트폴리오 보유 기업, 투자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딜 소싱 계획
- 디지털 뉴딜 관련 비상장기업에 70%이내, 디지털 뉴딜 관련 상장기업에 30% 이상 투자할 계획
- 능동형 컴퓨팅, 지능형 데이터분석, 고부가 서비스, 차세대 무선통신 미디어, 스마트 헬스케어 섹터 등에 분산 투자 예정
- 주목적 투자비율
* 뉴딜 관련 기업: 100% 수준
* 뉴딜 관련 중소·중견 기업: 100% 수준
- 포트폴리오 운용계획(안)
<table>
<tr><th>구분</th><th>상장 주식</th><th>상장 메자닌</th><th>비상장 주식</th><th>비상장 메자닌</th></tr>
<tr><td>뉴딜 관련 기업</td><td rowspan="2">-</td><td rowspan="2">30% 이상 수준</td><td rowspan="2">70% 이내 수준</td><td rowspan="2">-</td></tr>
<tr><td>뉴딜 관련 중소·중견 기업</td></tr>
<tr><td colspan="5">섹터구분</td></tr>
<tr><td>능동형컴퓨팅</td><td></td><td colspan="2">20% 수준</td><td></td></tr>
<tr><td>지능형데이터분석</td><td></td><td colspan="2">20% 수준</td><td></td></tr>
<tr><td>고부가서비스</td><td></td><td colspan="2">20% 수준</td><td></td></tr>
<tr><td>차세대 무선통신미디어</td><td></td><td colspan="2">20% 수준</td><td></td></tr>
<tr><td>스마트헬스케어</td><td></td><td colspan="2">20% 수준</td><td></td></tr>
</table>
</td></tr>
<tr><td>총보수율(연)</td><td>펀드 NAV 의 0.9%</td></tr>
<tr><td>리스크 관리 및 모니터링</td><td>
- 사전관리: 리스크 요인 정의 및 위험한도 설정
· 펀드내 기대수익률 및 위험 허용한도 파악
· 시장상황에 따른 자산배분전략 수립
· 운용 가이드라인, 위험관리규정 및 내부통제기준 등 사전 정립
- 중간관리: 위험 요소 모니터링
· Real time Monitoring system
· Daily Compliance check list
· 위험별 허용한도 초과시 즉시 보고 및 해소상황 체크
- 사후관리: 펀드 운용과 관련하여 주요 의사결정 상 필요할 경우, 투자 및 리스크 상 이슈를 위험관리위원회에 회부
· 위험관리위원회를 통한 위험요인 정기점검
· 실시간 위험요인 확인 및 일일 컴플보고서 작성
· Feedback 및 위험요소 제거
</td></tr>
</table>

⑦ 디에스 GND 일반 사모투자신탁

<table>
<tr><th>구분</th><th>주요 내용</th></tr>
<tr><td>운용사 개요</td><td>
<table>
<tr><th>운용사명</th><th>설립일</th><th>대표이사</th><th>자기자본</th><th>수탁고</th><th>임직원수</th></tr>
<tr><td>디에스자산운용</td><td>2008.04.15</td><td>위윤덕</td><td>953 억원</td><td>1 조 3,560 억원</td><td>45 명</td></tr>
</table>
* 자기자본 및 수탁고는 2020 년 12 월 31 일 기준. 임직원수는 2021 년 9 월말 기준
</td></tr>
<tr><td>핵심운용인력</td><td>
<table>
<tr><th>성명</th><th>주요 경력</th></tr>
<tr><td>이희상 책임</td><td>한국투자증권 기업금융본부, 삼일회계법인
(Audit 본부, Tax 본부)</td></tr>
</table>
</td></tr>
<tr><td>투자전략 및
투자비중</td><td>
- 그린 뉴딜로 인해 변화될 핵심 요소들을 선정 후, 관련 핵심 산업과 기업을 선별하여 집중 투자 계획
* 그린 뉴딜 정의: 저탄소 경제로의 변화는 핵심 인프라 요소의 변화/환경적 목표 넘어, 혁명적 수준의 경제 혁신 야기할 정책
- 창업자 등 네트워크, 기존 포트폴리오 보유 기업, 투자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딜 소싱 계획
- 그린 뉴딜 관련 비상장기업에 70%이내, 그린 뉴딜 관련 상장기업에 30% 이상 투자할 계획
- 차세대 동력장치, 신재생에너지 및 친환경 발전, 에너지 저장 및 효율 향상, 환경개선 및 환경 보호, 차세대 치료 등에 분산 투자 예정 포트폴리오 보유 기업, 투자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딜 소싱 계획
- 주목적 투자비율
* 뉴딜 관련 기업: 100% 수준
* 뉴딜 관련 중소·중견 기업: 100% 수준
- 포트폴리오 운용계획(안)
<table>
<tr><th>구분</th><th>상장 주식</th><th>상장 메자닌</th><th>비상장 주식</th><th>비상장 메자닌</th></tr>
<tr><td>뉴딜 관련 기업</td><td rowspan="2">-</td><td rowspan="2">30% 이상 수준</td><td rowspan="2">70% 이내 수준</td><td rowspan="2">-</td></tr>
<tr><td>뉴딜 관련 중소·중견 기업</td></tr>
<tr><td colspan="5">섹터구분</td></tr>
<tr><td>차세대 동력장치</td><td></td><td colspan="2">20% 수준</td><td></td></tr>
<tr><td>차세대 치료 등</td><td></td><td colspan="2">20% 수준</td><td></td></tr>
<tr><td>환경개선 및 환경보호</td><td></td><td colspan="2">20% 수준</td><td></td></tr>
<tr><td>신재생에너지 및 친환경발전</td><td></td><td colspan="2">20% 수준</td><td></td></tr>
<tr><td>에너지 저장 및 효율향상</td><td></td><td colspan="2">20% 수준</td><td></td></tr>
</table>
</td></tr>
<tr><td>총보수율(연)</td><td>펀드 NAV 의 0.9%</td></tr>
<tr><td>리스크 관리
및 모니터링</td><td>
- 사전관리: 리스크 요인 정의 및 위험한도 설정
· 펀드내 기대수익률 및 위험 허용한도 파악
· 시장상황에 따른 자산배분전략 수립
· 운용 가이드라인, 위험관리규정 및 내부통제기준 등 사전 정립
- 중간관리: 위험 요소 모니터링
· Real time Monitoring system
· Daily Compliance check list
· 위험별 허용한도 초과시 즉시 보고 및 해소상황 체크
</td></tr>
</table>

	- 사후관리: 펀드 운용과 관련하여 주요 의사결정 상 필요할 경우, 투자 및 리스크 상 이슈를 위험관리위원회에 회부 · 위험관리위원회를 통한 위험요인 정기점검 · 실시간 위험요인 확인 및 일일 컴플보고서 작성 · Feedback 및 위험요소 제거

※ 피투자 사모펀드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등의 내용은 해당 운용회사가 제공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시장상황의 변동이나 해당 운용회사 내부기준의 변경 또는 기타 사정에 의하여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비교지수: 해당사항 없음

- **사유: 이 투자신탁은 주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분산 투자하는 전략을 구사합니다. 그러한 이 투자신탁의 전략을 적절하게 반영하는 비교지수가 존재하지 않고, 이 투자신탁이 특정지수를 추종하거나 초과하는 목적으로 운용되지 않으므로 비교지수를 선정하지 않습니다.**

(2) 위험관리 전략

1) 리스크 관리 및 모니터링

- 정기 또는 수시로 최종 선정된 피투자 사모펀드의 성과/자체 리스크 관리 체계 보유 유무, 운용전략/운용스타일 점검 및 펀드매니저 컨퍼런스콜/전망 공유 등 다양한 기준을 바탕으로 위험을 관리하고 피투자 사모펀드 운용사와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 등을 통해 월간 단위 운용성과 보고서 수취 및 일별 기준가 모니터링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 특히, 피투자 사모펀드는 투자대상이 정해지지 않은 블라인드 방식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향후 펀드 운용 과정에서 주목적 투자 달성 여부 및 운용지침 이행에 관한 적합성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펀드의 외부감사를 의무화하여 법령 및 투자가이드 원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 피투자 사모펀드 운용사로부터 수령받는 운용보고서를 통해 피투자 사모펀드의 주목적 투자에 관한 내역 및 운용지침 이행 내역(투자 비율, 투자 내역, 투자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연 1회 회계법인 감사를 통해 검증받을 예정입니다. 또한, 회계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회계감사를 받아(회계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모펀드 운용사에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기 모니터링 사항

구분	내용
매월	• 사모펀드 운용 정보 월별보고서 – 신규투자, 회수, 감액 내역 등 • 펀드관리체크리스트
분기	• 자펀드 실물검증 및 수탁기관 정보 점검 • 기초자산 내역 • 분기 재무제표
반기	• 반기 영업보고서 • 반기 운용현황 보고 • 펀드 재무제표
연간	• 연간 영업보고서 • 펀드 재무제표 • 피투자기업 재무제표

수시 모니터링 사항

구분	내용
운용사	• 경영진 변동, 감독기관 재제 등 • 대주주 변경, 제 3자로부터의 피소 등 • 인허가 변경,재무상황 악화 등
펀드	• 핵심운용인력 변경 • 컴플라이언스 담당자 및 체계 변경 • 투심절차 변경, 투심위 이후 미집행건 등
투자기업	• 합병, 분할, 영업양수도, 대주주 변경, 상장, 상장폐지, 관리종목 지정, 재무상황 악화, 부도, 법정관리·워크아웃 등 • 투자조건 변경 및 법적 분쟁 등
기타	• 기타 펀드 운용상 중요한 사항

2) 유동성 관리

- 피투자 사모펀드의 성과 및 위험 지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수시로 유동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 피투자 사모펀드의 만기 1개월 이내 자산의 상당 부분을 유동성 자산(상장주식 등)으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3) 유동성 위험 및 그에 대한 비상조치계획

▪ 유동성 위험: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자산의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하거나, 매각이 어려운 자산인 경우 투자자산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환매가 불가능한 혼합자산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이와 같은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는 증권시장에 상장이 되어야 하며, 상장이 되더라도 거래량 부진 등의 사유로 투자자가 원하는 시기에 매매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거 경험으로 볼 때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혼합자산 집합투자기구는 거래량이 매우 제한적이었으므로 이 투자신탁 또한 증권시장 상장에도 불구하고 유동성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 투자신탁의 만기 시점까지 시장상황 및 경제여건 등에 따라 개별 피투자 사모펀드 자산의 처분이 완료되지 않거나 투자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수익자총회를 통하여 이 투자신탁의 만기가 연장되거나 불가피하게 상환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수익자총회에서 만기연장 등이 결의된 경우 당사는 피투자 사모펀드 운용사와의 지속적인 업무 협의를 통해 잔여 투자신탁재산 매각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며 처분된 자금을 재원으로 투자자들에게 순차적으로 상환금을 분배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부실자산 등이 발생하여 지속적으로 잔여 재산 처분이 불가능할 경우 부실자산과 매각 가능 자산을 분리하여 펀드를 설립할 수 있으며 매각 가능 자산으로 구성된 펀드의 현금 자산이 발생할 때마다 고객에게 투자비율에 따라 분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 이 투자신탁과 피투자 사모펀드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는 작성 시점 현재의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작성된 것으로 시장상황의 변동이나 운용사 내부기준의 변경 또는 기타 사정에 의하여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변경된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내용은 변경 등록(또는 정정 신고)하여 수시공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나.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한국판 뉴딜 정책 관련 기업 등에 투자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분산 투자하여 투자대상 자산의 가치상승 등에 따른 수익을 추구**합니다. 따라서 투자신탁재산이 투자한 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라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률(투자수익/손실)이 결정됩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 원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가. 일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집합투자증권 등 가격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등에 주로 투자하므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주식, 채권, 메자닌 등) 등의 가격 하락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대상 자산의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이 투자신탁의 가치도 일정수준 하락하게 됩니다.
시장위험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함으로써 투자신탁은 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의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채권 및 채권 관련 집합투자증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의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이 투자신탁은 주식, 채권, 선순위 대출 및 파생상품 등의 거래에 있어서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 등에 따라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채무불이행 위험이 커짐으로 인해 급격한 가치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파생상품(선물, 옵션)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효과(Leverage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옵션매도에 따른 이론적인 손실범위는 무한대로 집합투자재산의 큰 손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재간접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국내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자산의 가격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는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입시에 적용되는 기준가격과 집합투자기구에서 실제로 투자하는 자산의 가치가 일정한 시차를 두고 반영됩니다. 주요 투자대상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전략의 상세한 내역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대상 자산의 부도 등 신용리스크가 발생할 경우 권리행사 요구 및 처리과정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타 집합투자기구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직접 자산을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기회비용과 손실을 부담할 위험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를 직접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피투자 집합투자기구가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또는 법에서 정한 이 투자신탁에 대한 운용관련 규정을 벗어나서 운용될 수도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구 분	투 자 위 험 의 주 요 내 용
일반 사모 집합투자기구 투자에 따른 투자위험	- 이 투자신탁은 <u>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u>입니다. 주요 투자대상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는 공모 집합투자기구에서 적용되는 공시 의무 등이 법령 상 배제되어 운용과 관련된 정보의 상세한 내역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직접 자산을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는 물론, 공모 집합투자기구에 주로 투자하는 일반적인 재간접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기회비용과 손실을 부담할 위험이 있습니다. -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는 공모 집합투자기구에서 적용되는 운용규제 등이 법령 상 배제되어 상대적으로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투자를 수행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해 더 많은 투자위험이 존재할 수 있어 투자 결과에 따라 매우 큰 손실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특히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파생상품 위험 평가액 및 금전차입 한도는 최대 400%까지 허용되어 일반 공모 집합투자기구 대비 파생상품, 금전차입 등에 따른 레버리지 수준이 현저하게 높아질 수 있고, 공모 집합투자기구에서 적용되는 분산투자 등의 운용제한 요건이 배제되어 특정 종목 또는 자산에 대한 투자비중이 현저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서 적용 배제되는 주요 운용규제] ①각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 기준 동일종목의 증권 투자 제한: 10% ②각 집합투자기구 순자산총액 기준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 제한: 100% ③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기준 동일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투자 제한: 50% ④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기준 동일 집합투자증권 투자 제한: 20%(ETF의 경우 30%) ⑤각 집합투자기구 증권총액 기준 증권의 대여 제한: 50% ⑥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기준 증권의 차입 제한: 20%

일반 사모 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격 산정 관련 위험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시장가격이 결정되지 않는 자산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산의 시장가격이 결정되지 않는 경우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는 공정가격을 산출하여 기준가격에 반영할 수 있으나, 집합투자기구가 산정한 공정가격이 시장가격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매일 기준가격을 산출하지 않고 일정기간(주간, 월간 등) 동안 1번씩 기준가격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자산의 가치는 적시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격은 투자자산이 공정가격으로 평가될 경우 또는 적시에 기준가격이 산출되지 않을 경우에 실제 시장가치와 일정기간 동안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집중투자에 따른 위험(섹터)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뉴딜 산업에 속하는 증권 등에 선별적으로 집중 투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변동성 및 투자한 특정 섹터의 위험이 미치는 영향력이 동일유형의 일반적인 펀드 혹은 해당 시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주식관련 사채 및 비상장 주식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의 주식관련 사채(메자닌 증권) 및 비상장 주식에도 투자합니다. 주식관련 사채 등 메자닌 증권은 일반적으로 기업이 발행 비용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대적으로 발행 비용을 많이 지불해야 하는 신용등급이 낮거나 재무상황이 좋지 않은 기업 위주로 발행됩니다. 또한, 메자닌 증권은 일반 채권 대비 발행물량이 적고 시장이 협소하여 시장 매각 시 수요가 전혀 없거나 부족하여 매각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매각이 가능하더라도 적정가격을 받지 못할 위험이 있으며 신용경색 등의 시장상황이 발생할 경우 자산을 현저하게 낮은 가격에 매각하여 수익률이 급격히 낮아지거나 자산 등의 매각이 지연되어 만기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장내에 상장 되어도 일반주식에 비해 유동성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비상장 주식은 지분매각, IPO 등을 통해 매각할 계획이나 전반적인 시장침체로 인한 공모주 시장의 침체, 상장요건 미충족, 대주주 철회, 기타 소송 및 외부 변수 등으로 IPO가 무산되거나 사업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여건의 변화 및 사업부진 등의 사유로 투자대상 자산의 매각이 지연될 수 있는 위험이 있어, 이는 곧 투자신탁재산의 가치하락 및 이 투자신탁의 해지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선순위 대출 투자위험	선순위 대출채권 투자 시 투자대상 회사의 부실이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하여 담보를 설정할 예정이나 자산의 매각을 통한 전체 자금의 회수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선순위 대출채권의 신용도나 가치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의 발생, 대출채권의 조기상환, 대출채권 담보자산의 매각이 불가능 하거나 지연될 경우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 투자신탁의 만기가 연장 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중소·중견기업 투자위험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중소·중견기업들은 높은 수준의 사업위험과 재무적 위험을 지니기에 상당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중소·중견 기업들은 초기개발단계에 있거나 영업손실 또는 변동성이 큰 영업성과를 보일 수 있고 사업환경이 빠르게 변할 수 있습니다. 초기단계 중소·중견기업들은 우수한 인적자원을 보유하고자 할 때 경쟁이 매우 심하며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거나 특정기술을 최초로 상용화는 능력에 의해 그 성패가 좌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중소·중견기업들은 운영을 지속하기 위하여 상당한 자본이 요구되며 기존 기업 및 경쟁 기업들로부터 상당한 경쟁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화하는 사업 및 경제환경에 대한 이들 기업의 대응능력은 제한적일 수 있으며 어떤 life cycle 단계에서도 실패하거나 상당한 가치하락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중소·중견기업들에 대한 투자는 이미 자리잡은 기업 또는 산업에 대한 투자보다 큰 위험을 수반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유가증권은 개별기업의 재무구조에 있어서 가장 후순위에 해당되며 이에 큰 손실위험을 수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 기타 투자위험

구 분	투 자 위 험 의 주 요 내 용
유동성위험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자산의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하거나, 매각이 어려운 자산인 경우 투자자산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환매가 불가능한 혼합자산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이와 같은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는 증권시장에 상장이 되어야 하며, 상장이 되더라도 거래량 부진 등의 사유로 투자자가 원하는 시기에 매매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거 경험으로 볼 때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혼합자산 집합투자기구는 거래량이 매우 제한적이었으므로 이 투자신탁 또한 증권시장 상장에도 불구하고 유동성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장거래 시 가격괴리 위험	이 투자신탁은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로 증권시장에 상장될 예정이나, 상장된 이후에도 이 투자신탁의 거래가격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순자산가치를 의미하는 1 좌당 기준가격(NAV)과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증권 설정취소 위험	이 투자신탁의 모집(판매)이 예정된 규모 이하인 경우 또는 시장이 급변하는 경우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만기연장 및 상환금 지급 지연 위험	이 투자신탁은 만기가 최초설정일로부터 4년(48개월)인 **폐쇄형 투자신탁으로 환매청구가 불가능한** 투자신탁입니다. 투자신탁의 만기까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자산의 매각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수익자총회를 통하여 상환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만기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수익자총회에서 만기연장이 결의된 경우에도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수익증권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매수청구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이 주식관련사채(메자닌 증권) 및 상장·비상장 주식이므로 해당 자산이 처분되지 아니하여 투자신탁의 재산으로 수익증권 매수가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상환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과세 위험	과세당국에서 인식하는 투자에 따른 손익은 세금을 내야 하는 과세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익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익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과세손익은 수익이 있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손해를 보더라도 이를 손실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비과세대상자산에서 손실을 본 경우라도 과세대상자산에서는 발생한 수익이 있다면 결과적으로 전체 투자결과가 손실이 발생한 경우라도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손실 발생 시 후순위 출자자가 우선 부담하는 손실은 선순위 출자자의 과세대상수익으로 인식되어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투자자의 이익이 없거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자산의 예: 채권투자 시 이자수익 및 자본수익, 해외투자수익 등 *비과세대상자산의 예: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 등

※ 위 내용은 작성 시점 현재의 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파악된 이 투자신탁의 주요 투자위험을 명시한 것으로 이 투자신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1) 이 투자신탁은 **1등급에 해당되는 매우 높은 위험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주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므로 투자대상 자산의 가격 하락 등에 따른 원본손실 위험을 감내할 만한 위험

선호도를 지니고 있으며, 상기 위험수준을 이해하면서 본인의 투자목적에 부합하다고 판단하시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이 기준에는 신용위험 및 운용위험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 환금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한국거래소에 상장할 예정이나 유동성이 낮아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수 있으며, 실제 공시되는 기준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2) 이 투자신탁은 설정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투자위험 등급을 산정하였습니다. 설정 후 3년이 경과시 실제 수익률 변동성으로 등급분류 기준이 변경되면서 위험등급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KB자산운용㈜는 설정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를 기준으로 투자위험 등급을 6개의 등급으로 나눕니다.

위험등급	국내투자 신규펀드 등급 분류기준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 레버리지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여 투자시 주의가 필요한 집합투자기구 ▪ 최대손실률이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2등급 (높은 위험)	▪ 고위험자산에 8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3등급 (다소 높은 위험)	▪ 고위험자산에 8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최대손실률이 20%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4등급 (보통 위험)	▪ 고위험자산에 5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중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5등급 (낮은 위험)	▪ 저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수익구조상 원금보존추구형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6등급 (매우 낮은 위험)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 단기 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1. "고위험자산"은 주식, 상품, REITs, 투기등급채권(BB+등급 이하), 고위험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2. "중위험자산"은 채권(BBB-등급 이상), CP(A3등급 이상), 담보부 대출, 대출채권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3. "저위험자산"은 국공채, 지방채, 회사채(A-등급 이상), CP(A2-등급 이상), 현금성 자산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4. 해외투자펀드는 국내펀드 분류기준을 준용하되 환헤지여부·투자국가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위험등급을 조정함
5. 위에 명시되지 않은 펀드의 위험등급은 투자대상·손실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내부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며, 개별펀드의 위험자산 투자비율은 운용전략·벤치마크(BM) 등을 고려하여 결정함

주) 이 기준은 KB자산운용㈜ 내부기준으로 주로 시장리스크 및 신용리스크를 가장 큰 리스크요인 사항으로 고려하여 평가하였으며, 투자자 본인이 판단하는 기준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기 투자위험 분류 기준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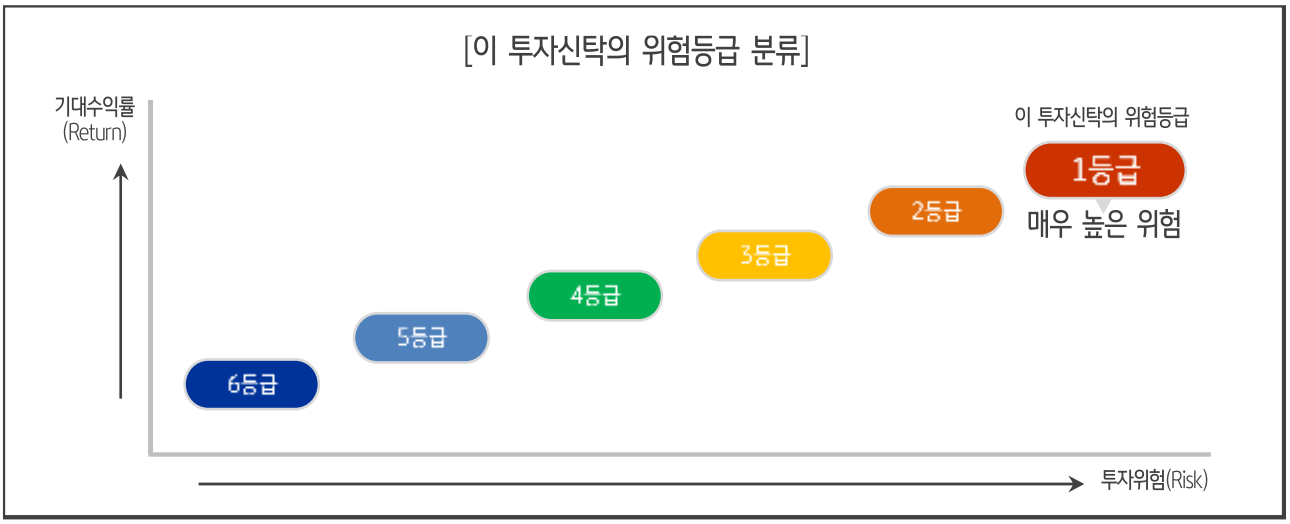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1) 집합투자증권의 발행: 이 투자신탁은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서 최초로 모집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설정 후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1) 기존 투자자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

2) 기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다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은 경우

3) 이익분배금의 범위에서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발행하는 경우

4) 기존 투자자에게 집합투자증권의 보유비율에 따라 추가로 발행되는 집합투자증권의 우선 매수기회를 부여하는 경우

5) 그 밖에 기존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2)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좌당 1,000원으로 합니다.

(3) 선취판매수수료

1) **A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납입금액의 0.7% 이내**

2) 그 외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해당사항 없음

※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4) 종류별 가입 요건

종류(클래스)		가입자격
A	수수료선취-오프라인	가입제한 없음
C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가입제한 없음

나. 환매

이 투자신탁은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로서 환매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환매가 불가능한 상품(폐쇄형)으로 환금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당해 집합투자증권을 한국거래소에 상장(설정일 이후 90일 이내)하고 있으나,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일반적인 상장주권에 비해 유동성이 낮아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수 있으며, 실제 공시되는 기준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 투자신탁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더라도 수익자가 이를 현금화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만기까지 보유할 수 있는 수익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다. 전환: 해당사항 없음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 분	내 용
기준가격 산정방법	기준가격[당해 종류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은 공고·게시일 전날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집합투자증권의 상당액]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그 공고·게시일 전날의 집합투자증권[당해 종류 집합투자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클래스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클래스간 판매회사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클래스간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기준가격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없는 종류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은 산정하지 않습니다.
기준가격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없는 종류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은 공고·게시하지 않습니다.
기준가격 공시방법 및 장소	판매회사: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 집합투자업자: 인터넷 홈페이지(www.kbam.co.kr)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www.kofia.or.kr)

※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의 종류별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사항과 충실의무, 평가의 일관성 유지 등을 준수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평가한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산구분	평가기준
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취득한 국가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비상장 비등록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회계법인/신용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장내파생상품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증권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 ·다만, 외국의 장내파생상품의 경우 평가기준일에 알 수 있는 최근일의 최종시가
국내 상장채권	평가기준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국내 비상장채권 (CP, CD 포함)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외화표시 채무증권	당해 유가증권을 취득한 국가에 소재하는 거래소의 최종시가 또는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장외파생상품 및 실물자산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계산된 가격에 기초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가격
파생결합증권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과 당해 파생결합증권 발행사 또는 계산대리인이 제시하는 가격에 기초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결정한 가격

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ETF)는 증권시장 등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외국 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의 최근일에 공고된 당해 외국펀드의 기준가격 ·다만, 외국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외국집합투자증권은 그 외국펀드가 거래되는 외국 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 KB자산운용은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위험관리책임자, 운용담당임원,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담당임원 및 준법감시인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두며, 해당 평가위원회는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자산의 공정가액 산정,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의 분류 및 평가,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의 종류별 평가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

다. 피투자 사모펀드의 기준가격 산정 및 집합투자재산 평가방법

자산구분	평가기준
기준가격 산정방법	기준가격은 공고·게시일 전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그 공고·게시일 전날의 집합투자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기준가격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기준가격 공시시기	일반 사모펀드로 해당사항 없음
기준가격 공시방법 및 장소	
집합투자재산 평가방법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의 종류별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사항과 충실의무, 평가의 일관성 유지 등을 준수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평가한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시장가격이 없는 자산에 투자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공정가액 산정방법을 결정하고 자산평가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산정한 공정가격이 시장가격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피투자 사모펀드의 기준가격 산정 및 집합투자재산 평가방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투자전략 부분의 피투자 펀드 상세 내용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보수 및 수수료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는 투자자가 부담하는 판매보수 및 수수료에 관하여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해당 투자자에게 교부하고 설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동 내용을 참고하시어 판매회사로부터 충분한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종류(클래스)		수수료율			
		선취판매수수료	후취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전환수수료
A	수수료선취-오프라인	납입금액의 0.7% 이내	-	-	-
C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	-	-	-

부과기준	매입시	환매시	환매시	전환시

※ 선취판매수수료율은 상기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 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습니다. 차등적용의 내용은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종류	지급비율(연간, %)									
	집합투자업자보수	판매회사 보수	신탁업자 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투자신탁 총 보수	기타 비용	총 보수·비용	동종유형 총 보수	합성 총 보수·비용	증권거래비용
A	0.350	0.400	0.015	0.015	0.780	-	0.780	1.030	1.680	-
C	0.350	0.600	0.015	0.015	0.980	-	0.980	1.240	1.880	-
지급시기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개월 후급					사유 발생시	-	-	-	-

※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총 보수·비용은 순자산 총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기타비용을 합산하여 산출한 것입니다.

※ 합성 총 보수·비용은 이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기타비용(피투자펀드 보수 연 0.90%로 예상하여 적용하였으나, 이는 추정치 이므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음)을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합산한 총 보수·비용을 순자산 연평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A 클래스와 C 클래스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3년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나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동종유형 총 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 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금융비용 및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납부하는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누적) >

(단위: 천원)

종류(클래스)			1년	2년	3년	4년
A	수수료선취-오프라인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49	232	318	408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240	415	597	784
C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00	204	313	426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92	389	592	802

※ 위 예시내용은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선취판매수수료 또는 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율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기구의 A 클래스와 C 클래스에 각각 투자하여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는 총보수·비용은 C 클래스에 가입한 투자자가 A 클래스(선취판매수수료 0.7% 징구 가정)에 가입한 투자자보다 더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부담하게되는 총보수·비용 차이 등을 고려하여 투자 판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 배분

(1)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현금으로 분배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해당 이익금의 범위 내에서 분배를 유보하며,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240조 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이익 유보에 따른 안내 사항]

최초설정일 이후 매년 결산·분배할 때 투자신탁의 회계기간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산·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의 결정에 따라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시,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배금액(이하 “초과이익 분배금”이라 한다)은 집합투자업자가 결정합니다.

(3) 집합투자업자는 투자대상 집합투자증권 등의 해지(일부해지를 포함한다), 매각, 배당금 수령 등에 따라 현금성 자산이 발생할 경우 이익금 및 초과이익 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익금 및 초과이익분배금의 규모, 지급시기 및 방법 등은 집합투자업자가 결정합니다.

(4) 투자자는 이익금 및 초과이익 분배금으로 당해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매수할 수 없습니다.

(5)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 등”이라 한다)을 받으실 수 있으며,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등의 해지(일부해지를 포함한다) 또는 매각(일부매각을 포함한다) 등에 따라 현금성 자산이 발생할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결정에 따라 투자신탁원본 일부에 해당하는 상환금 등을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6) 투자자가 상환금 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으며, 판매회사에게 인도된 후에는 판매회사가 투자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나.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투자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집합투자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으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투자신탁으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투자자에 대한 과세: **원천징수 원칙**

투자자는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 변경, 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으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과세당국에서 인식하는 투자에 따른 손익은 세금을 내야 하는 과세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익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익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과세손익은 수익이 있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손해를 보더라도 이를 손실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비과세대상자산에서 손실을 본 경우라도 과세대상자산에서는 발생한 수익이 있다면 결과적으로 전체 투자결과가 손실이 발생한 경우라도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투자자에 대한 과세율: **개인 및 일반법인 15.4%(지방소득세 포함)**

거주자 개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형별 소득을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수입금액과 다른 법인 수입금액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신규 투자신탁으로 해당사항 없음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신규 투자신탁으로 해당사항 없음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신규 투자신탁으로 해당사항 없음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 집합투자기구의 운용구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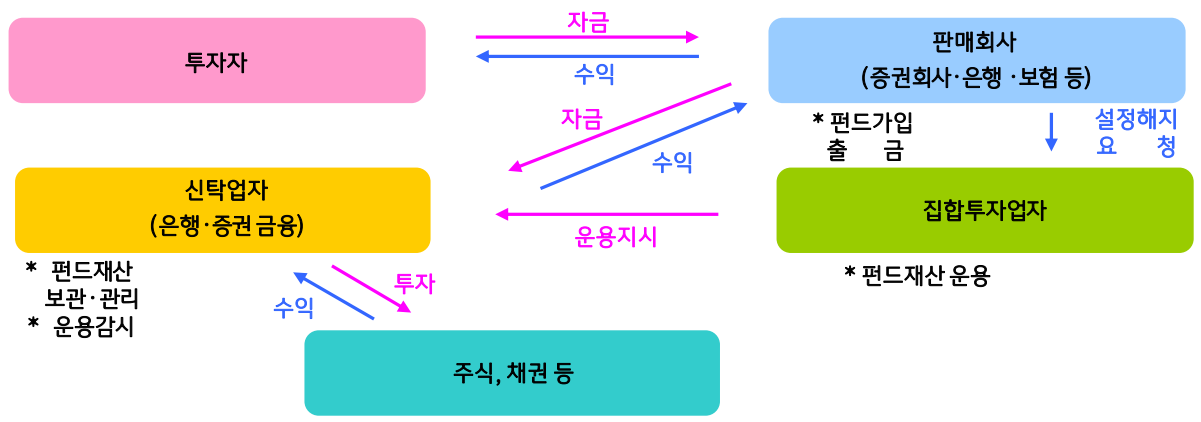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 개요

회사명	KB자산운용㈜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 2167-8200
주요 연혁	1988.04.28 국민투자자문 설립(모회사 국민투자신탁 지분 100%) 1992.12.07 대주주 변경(국민투자신탁 → ㈜주택은행) 1992.12.09 '국민투자자문'에서 '주은투자자문㈜'로 사명변경 1997.05.20 납입자본금 300억원으로 증자, 투자일임매매업 인가 취득 1997.07.29 투자신탁운용업 허가 취득 1997.08.28 '주은투자자문㈜'에서 '주은투자신탁운용㈜'로 사명변경 1997.08.28 투자신탁운용업 개시 2000.01.11 ING Insurance International B.V. 지분참여(20%) 2000.06.30 자본금 83억 증자 2002.06.10 '주은투자신탁운용㈜'에서 '국민투자신탁운용㈜'로 사명변경 2004.04.29 '국민투자신탁운용㈜'에서 'KB자산운용㈜'로 사명변경 2008.09.29 대주주 변경(㈜국민은행 → ㈜KB금융지주)
자본금	38,337,750,000원
주요주주	㈜KB금융지주 100%
투자신탁 관련회사 중 집합투자업자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국민은행(계열회사)

나. 주요 업무

(1)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영위합니다.

1)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2)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운용지시

(2)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1)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2)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계산으로 행한 법률행위로부터 발생한 제비용 및 보수를 신탁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에서 인출할 수 있습니다.

3)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자신의 채무를 투자자의 명의로 부담하게 하거나 집합투자재산으로 이를 변제할 수 없습니다.

4)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채권은 그 집합투자업자의 당해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5)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가 법령, 신탁계약서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6)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1) 연결재무상태표

(단위: 원)

과 목	제34기	제33기
기 간	2021.12.31	2020.12.31
현금 및 예치금	24,731,965,119	25,208,659,305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263,882,958,430	228,849,406,73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31,232,442,840	32,860,820,000
파생상품자산	92,644	1,044,163,484
대출채권	2,667,000,000	2,949,000,000
유형자산	5,886,597,143	6,355,630,714
기타금융자산	37,876,816,124	28,704,817,657
이연법인세자산	3,180,592,536	3,990,483,712
기타자산	6,280,645,012	5,638,463,233
자산총계	**375,739,109,848**	**335,601,444,839**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	-	-
예수부채	1,553,477,688	4,941,546,898
파생상품부채	297,257,099	119,023,012
기타금융부채	88,079,518,208	75,298,649,941
충당부채	742,612,802	624,068,802
순확정급여부채	343,807,433	363,701,108
기타부채	37,572,098,495	31,175,368,763
부채총계	**128,588,771,725**	**112,522,358,524**
지배기업주주지분	247,150,338,123	223,079,086,315
자본금	38,337,750,000	38,337,750,000
자본잉여금	245,566,038	245,566,038

기타포괄손익누계액	-604,350,341	223,285,397
이익잉여금	209,171,372,426	184,272,484,880
비지배지분	-	-
자본총계	**247,150,338,123**	**223,079,086,315**
부채와 자본총계	**375,739,109,848**	**335,601,444,839**

(2) 연결포괄손익계산서

(단위: 원)

과 목	제34기	제33기
기 간	2021.01.01~2021.12.31	2020.01.01~2020.12.31
영업수익	254,161,757,236	191,426,762,601
영업비용	146,225,405,575	112,687,066,575
영업이익	107,936,351,661	78,739,696,026
영업외수익	527,210,305	260,895,588
영업외비용	880,8558,113	1,060,170,173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07,583,003,853	77,940,421,441
법인세비용	27,684,116,307	20,623,778,042
당기순이익	79,898,887,546	57,316,643,399
기타포괄이익	-827,635,738	485,230,514
총포괄이익	79,071,251,808	57,801,873,913

라. 운용자산 규모

(2022년 06월 20일 현재, 단위: 억좌)

투자신탁종류	증권					부동산	특별자산	혼합자산	MMF	총 계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파생상품형	재간접형					
수탁고	72,376	20,071	80,097	27,534	37,304	46,294	141,096	13,929	83,356	522,056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업무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음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음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가. 회사의 개요

회사명	기업은행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 50번지
전화번호	☎ 729-6114
인터넷 홈페이지	www.ibk.co.kr

나. 주요 업무

(1)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영위합니다.

1)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
2)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3)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4)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2)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1)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지시하는 사항의 집행, 취득한 증권 등의 보관 및 관리,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2) 신탁업자는 투자설명서가 법령 또는 신탁계약서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또는 기준가격산출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관한 집합투자업자의 지시가 법령, 신탁계약서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그 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신탁업자의 요구를 제3영업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련 내용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할 수 있습니다.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사명	㈜국민은행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4길 21 KB증권빌딩 7층
전화번호	☎ 1588-9999
인터넷 홈페이지	www.kbstar.com

나. 주요 업무

(1)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산출업무를 합니다.
(2)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5.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사명	KIS채권평가㈜	한국자산평가㈜	NICE 피앤아이㈜	에프앤자산평가㈜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11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 194-27
전화번호	☎ 02-3215-1450	☎ 02-399-3350	☎ 02-398-3900	☎ 02-721-5300
인터넷 홈페이지	www.bond.co.kr	www.koreaap.com	www.npricing.co.kr	www.fnpricing.com

나. 주요 업무

(1) 채권시가평가 정보제공 업무
(2) 채권관련 자료 및 분석 tool 제공 업무

(3) 자산평가 업무(부실채권 등 보유자산평가, ABS, MBS, 금리스왑 평가 등)
(4) System 사업(채권운용지원시스템 BPO 제공, 통합신용위험 시스템 CRO제공 등)
(5) 국내외 금융시장 정보수집, 조사, 연구 및 제공 업무
(6) 채권관련 컨설팅 업무 등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총회 등

(1) 수익자총회의 구성: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투자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두며, 수익자총회는 법령, 신탁계약서의 수익자총회 개최 사유 중 이 투자신탁 투자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한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집합투자증권 투자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종류의 투자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1) 수익자총회는 이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2)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집합투자증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투자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그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집합투자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투자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3)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집합투자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집합투자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4)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수익자는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봅니다.

1. 수익자에게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신탁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집합투자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집합투자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5) 특정 종류의 집합투자증권 투자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1)~4) 내용 중 “발행된 집합투자증권”은 “발행된 당해 종류 집합투자증권”으로 봅니다.

(3) 연기수익자총회

1)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2) 연기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집합투자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집합투자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4)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4)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5)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5)의2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6)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7)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8)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9)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5) 투자신탁의 합병
1)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을 흡수하는 방법으로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습니다.
2)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193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 시행령 제225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6) 반대매수청구권: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집합투자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법 제188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193조 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집합투자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2) 법 제19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투자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1)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에 대하여 영업시간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투자자에 관련된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2) (1)의 규정에 의한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청구의 대상이 되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투자신탁재산 명세서
2)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3)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4) 투자신탁재산 운용내역서

라. 손해배상책임

(1) 금융투자업자가 법령,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당해 투자신탁재산의 투자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2)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투자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해당 주체[1]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투자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해당 주체[1]: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한 자 및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마. 재판관할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가 이 투자신탁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합니다.

(2) 투자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투자자의 선택에 따라 투자자의 주소지 또는 투자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자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투자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1)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서 등 투자신탁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투자자는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언제든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이 투자신탁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격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및 복사하거나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 그리고 KB자산운용 홈페이지(www.kbam.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1)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2)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3)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4) 투자신탁의 등록·취소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 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나.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1) 투자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집합투자증권 전부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매분기의 영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매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를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 투자신탁재산에 대한 결산서류를 작성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 이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2)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종료

3) 투자신탁의 해지

(3) 자산운용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해당 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4)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계약기간 종료 및 해지 후 2월 이내에 법 제248조에서 규정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5)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1)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가)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나)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라) 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지 않고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 일간신문 또는 집합투자업자 인터넷 홈페이지(www.kbam.co.kr)를 통해 1회 이상 공고하며,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는 때에는 매일경제신문에 공고하되 2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때에는 경향신문에도 공고합니다.

(2) 수시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kbam.co.kr), 판매회사 홈페이지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투자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는 때에는 매일경제신문에 공고하되, 2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때에는 경향신문에도 공고합니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내역 및 상각율

4) 수익자총회의 의결내용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의 개정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거나, 신탁계약서의 변경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및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 및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변경은 제외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법 시행령 제26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공고·게시하는 경우에 한한다)

8)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1)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인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권행사내용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가) 법 제87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나)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 내용 및 그 사유

(다)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2)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가)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법 제87조 제7항에 따른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해당사항 없음

나. 집합투자기구 간 거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 선정 기준

구 분	중 개 회 사 의 선 정 기 준
투자증권 거래 및 장내파생상품 거래	**증권 거래 및 장내파생상품 거래에 관한 중개회사의 선정기준은 KB자산운용㈜ 내부통제 기준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① 회사는 중개회사를 선정함에 있어 투자자에게 최대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펀드 또는 투자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중개수수료)이나 수익(Value of Research) 2. 거래 유형(예: 상장주식 블록매매, 장외주식매매, 파생거래, 채권매매 등)에 따른 매매체결 능력 3. 중개회사의 재무상황, 규모 등 발생 가능한 리스크 ② 회사는 중개회사를 선정함에 있어 자기가 운용하는 펀드의 판매를 조건으로 매매주문을 위탁하기로 약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중개회사에 대한 수수료는 제공받는 서비스의 질과 양, 다른 중개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율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지급하여야 하며, 관계회사 등에 대하여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우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회사는 중개회사별 매매주문 배분계획을 수립하고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아 계획된 배분비율에 의하여 중개회사에 매매를 위탁하여야 한다. ⑤ 준법감시인은 중개회사별 매매주문 배분계획과 실제 매매내역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명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 투자주체: KB자산운용㈜
- 투자목적: 투자자와 운용사간 펀드성과에 대한 공유장치 마련
- 투자시기: 최초설정일
- 투자금액: 2억원
- 투자기간: 투자일로부터 투자신탁 신탁계약기간 종료일까지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해당사항 없음

[참고] 펀드용어의 정리

용 어	내 용
펀드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 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집합투자증권	펀드(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수익증권으로서 주식회사의 주권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순자산	펀드의 운용성과 및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상장주식의 경우 회사명 또는 코드번호 6자리를 활용하여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집합투자기구 또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부여하는 5자리의 고유 코드가 존재하며, 집합투자기구명 뿐만 아니라 이러한 코드를 이용하여 집합투자기구의 각종 정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	투자신탁재산의 투자비율 제한이 없는 펀드를 말합니다.
폐쇄형	환매가 불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단위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불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종류형	멀티클래스 펀드로서 자금납입방법, 투자자자격, 투자금액 등에 따라 판매보수 및 수수료를 달리 적용하는 펀드입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가격으로서 매일매일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보수	펀드에 가입 후 펀드 운용 및 관리에 대해 고객이 집합투자재산으로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선취수수료	펀드 가입 시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설정	펀드에 자금이 납입되는 것을 지칭합니다.
해지	펀드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투자회사의 해산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투자자총회	집합투자규약상의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펀드의 모든 가입자들이 모여서 의사 결정하는 기구. 그 방법 및 절차는 법령 및 해당 규약에 따릅니다.
비교지수	벤치마크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 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Active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 펀드는 그 비교지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